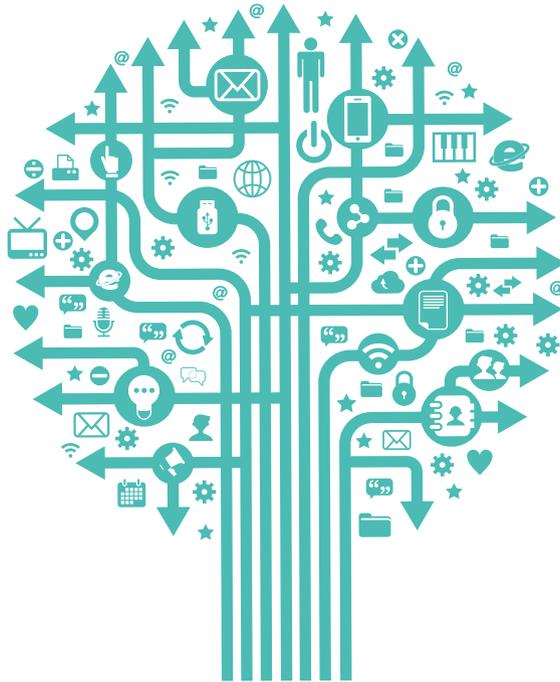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 2018 정보공개 사례집





# Contents

---

<b>제1장</b> 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정보공개의 원칙	4
	개인에 관한사항	12
	공무원 관련 정보	14
	회의 관련 정보	16
	업무추진비	22
	사업 관련 정보	25
	부존재 정보	31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33
	정보의 공개방법	35
	시험 관련 정보	38

---

<b>제2장</b> 정보공개 분야 결정례	법령상 비밀 · 비공개	42
	국방 등 국익침해	6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88
	재판 관련 정보 등	11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133
	개인의 사생활 보호	170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207
	특정인 이익 · 불이익	279
	정보부존재 등 기타	292

---

<b>제3장</b>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5년도 개최내역	350
	2016년도 개최내역	363
	2017년도 개최내역	375

# 판례 목차

## 01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 아들이 수용된 기관명, 수용기간, 아들을 아동보호시설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문서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43
- 2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925 45
- 3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 대법원 2006두11910 50
- 4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 헌법재판소 2003헌바81 52

## 02 국방 등 국익침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1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 64
- 2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 70
- 3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관련 9개국과 체결한 개별 합의문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467 80

## 0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1 ○○시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070 89
- 2 핵연료 공장의 증설 관련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서 등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014 93
- 3 특정 방화사건에 관련 수사기록 전체 | 서울고등법원 2012누28249 103
- 4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 수사기록 전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284 108

## 04 재판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 |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44 115
- 2 거짓말탐지기검사 질문표,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16 120
- 3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CCTV 영상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631 123
- 4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입료 내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888 126
- 5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의견서 | 대법원 2010두7048 131

## 0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① 역사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 등 | 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134
- ② ○○○○멘토링 프로그램 심사위원 인적사항, 평가점수,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20954 139
- ③ 본인이 응시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시험 답안(문제은행 출제방식)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21751 144
- ④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9186 149
- 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활동기간, 각 검찰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 안건 등 | 법무부 09-17315 157
- ⑥ 본인이 응시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전과목 문제지(출제위원 출제방식)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163

## 06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① 행정심판위원회 특정 사건 관련 심리시간 및 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  
참석 및 심리수당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4422 172
- ② 5급 및 5급 상당 간부 이상 공무원 전원에 대한 개인별 출장 여비 수령내역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5-349 176
- ③ 기초생활수급 관련 미성년 자녀가 작성한 민원 제기 서류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73 182
- ④ 특정 공무원의 이전 근무지, 직명 및 보직이력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72 185
- ⑤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공사 직원 포함)의 직위와 명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7-14671 188
- ⑥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관련 현지조사 측량자·현지조사위원·감독자 성명과 직위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7-19790 192
- ⑦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 관련 일체의 서류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 196
- ⑧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서류 및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 대법원 2003두8302 202

## 07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 서울고등법원 2016누75502 209
- ②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214
- ③ 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 발송한 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00707 220
- ④ □□대학교와 인천시 간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4606 227
- 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 관련 문서 등 (납품업체 견적서 포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0717 232
- ⑥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와 설문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2713 238
- ⑦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일체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2012-51 244
- ⑧ ○○○○시가 국내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21525 250
- ⑨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비교표) | 서울고등법원 2008누22145 254
- ⑩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한임대차계약서 | 서울고등법원 2008누26574 260
- ⑪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 및 상위 20개 의약품 관련 정보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482 262
- ⑫ ○○도가 사용한 환경시책홍보비 내역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8-22417 269
- 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평가등급 1등급과 9등급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 등의 정보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6833 274

## 0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①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에서 사용한 PPT자료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1-373 280
- ② 특정 임대아파트 및 ○○지구의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및 건설원가 등 관련 자료 일체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342 284

## 09 정보부존재 등 기타

- ① 본인 근무부서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두44674 292
- ② 119 신고자의 신고내용 녹음파일, 구급활동일지 사본, 현장 도착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부 영상(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공개방법을 열람공개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3423 296
- ③ 수련시설 △△△컨설턴트과정 소방, 전기, 건축분야 합격자 담당업무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전기분야 합격자점수(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한 경우) 30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8913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하여 행정지도 및 조사한 자료 일체,  
위반자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정보공개 관련 문자발송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66 308
- ⑤ 구청장 전용 관용차량 현황(특정인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일률적 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28 314
- ⑥ 차량 교통사고 관련 정보(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종결한 사항)  
3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9943
- ⑦ 특정 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323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78
- ⑧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질의(실질적으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8740 328
- ⑨ 최근 1년간 주차이동을 명한 건수, 운전자가 없는 주차(정차) 차량에 과태료부과  
331  
또는 견인한 건수(부존재 정보-미보유)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3-1172
- ⑩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  
335  
(이미 공개한 정보 중복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1063
- ⑪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접속, 열람한 내역 등(부존재 정보 - 새로운 정보의  
338  
생산 또는 가공) | 대법원 2011두9942
- ⑫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청구한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341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대법원 2009두6001
- ⑬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건설원가 계산원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택시보상내역 등  
345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비공개한 경우) | 대법원 2006두4899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8 정보공개 사례집



# 제1장

## 주제별 정보공개 사례

정보공개의 원칙	4
개인에 관한사항	12
공무원 관련 정보	14
회의 관련 정보	16
업무추진비	22
사업 관련 정보	25
부존재 정보	31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33
정보의 공개방법	35
시험 관련 정보	38



# 정보공개 원칙

##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일반적으로 알권리는 그 근거를 국민주권의 원리,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었다고 해석된다. 헌법 제21조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88헌마22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알 권리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291, 헌법재판소 2003헌바81 등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2호)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제정되어 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 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

대법원 97누5114

## 공개여부의 판단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제5조 제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070

##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령해석례 12-0188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두304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478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위 토지의 불법성토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는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해 준 자료**는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상급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점**,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자료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라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3833

## 정보의 특정

국민 개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 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였다면** 그로써 정보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 부분공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두12707

## 비공개 이유제시 의무

행정청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정당성·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분의 이유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되어 처분의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개청구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 2013누848, 대법원 2003두1370, 대법원 2006두4899 등

이 사건 행정정보의 어느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처분사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두4899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두8680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는 제11조 제3항(공공기관은 그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면 족하고 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어서** 적법한 처분 근거 및 이유의 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절차를 거쳤더라도 제3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채 한 정보공개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범위

(개정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등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권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이루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알권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자유 영역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 권리인 점,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로 인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행정자치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기관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알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적어도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4

##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

이 사건에 있어, 원고(국회의원)들이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국회법 제122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서면질문권이나 제128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임을 전제로 일반국민보다 정보공개 범위가 더 용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

## 정보공개법의 배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두17384, 대법원 2007두2555

##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아동복지법 제65조’는 아동복지사업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각 조항은 비밀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이 사건 각 정보 중에는 제3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금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이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문서 전체가 아닌 문서의 일부만이 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혼합문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



# 개인에 관한 사항

##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18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며 개성을 신장시키기를 바라고 사생활에 관하여 외부적 간섭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 민원상담 관련 정보

민원상담 내용 중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민원인은 민원상담을 요청함에 있어서 민원상담의 내용이 개인에게 있어서 민감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를 염려하여 비공개요청을 하고 있는 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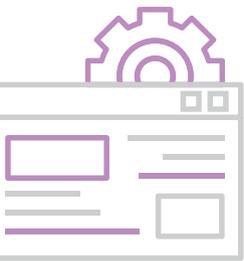
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민원상담 내용 중 **비공개부분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거의 없는** 반면, 원고의 명예회복 내지 원고가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의 재판진행을 위하여서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 판례 속 비공개 개인정보

피의자신문조서 내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 관련자들의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직장주소), 본적, 전과 및 검찰 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 등	대법원 2011두2361
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5-17455
세부항목별 근무성적평정표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2656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대법원 2009두6001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대법원 2009두2702
CCTV에 녹화된 통행인 얼굴	대법원 2012두25729
배우자의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혼인관계,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경위, 부동산 매입자금 등 재산형성과정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9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전 가구의 가구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575
사업승인 심사자료에 포함된 개인 주주의 성명, 출자액, 신규발행 주식 수, 총투자액, 주식 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 및 직위, 국적, 법인 주주 대표이사 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경력, 비용지출 수령인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수령금액 등 정보 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890
특정 공무원의 이전 근무지, 직위 및 보직 이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72



## 공무원 관련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7-14671

### 근무성적평정 정보

**근무성적평정**은 근본적으로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자의 종합적인 분석·평가이므로 그 평정요소의 내용이나 기준이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의하여 평정을 한다 하더라도 평정의 과정에 있어서 평정자나 확인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근무성적평정을 사후에라도 공개하게 되면 **평정대상자에 대한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셈이 되어, 평정자나 확인자로서는 그 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담을 갖게 되고 또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정자가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에도 평정자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평정대상자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조항이 근무평정결과를 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

## 특정 공무원의 인사정보

특정 공무원의 이전 근무지, 직위 및 보직 이력은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대상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72

(전 공무원 8인의 인사기록에 대하여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전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5-17455



## 회의 관련 정보

### 회의록의 공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아직 형성과정에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공개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 ○○진흥회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장의 선임,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정관의 변경,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기본운영계획,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진흥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직위이고, 상법상의 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과 비치에 강제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인하여 이사들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다소 있을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다소 위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날인 등이 없어서 완성된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안 형태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내용도 이미 특정되어 있었으며, 그 작성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0847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 및 제42조의10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 위임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

항일 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이 전부 비공개 사항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15150

## 회의록의 부분공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회의록**의 경우 이미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원고가 성명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를 구하고 있어 **회의참석자의 발언내용 중에서도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면 될 것이며, 회의과정에서의 발언을 반드시 비공개로 하여야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닌 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원심은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원고를 참석시켜 징벌절차를 진행한 다음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내용이 기재된 위 각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그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내용이 공개된다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그에 앞서 **원고 참석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원고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이를 공개한다 해서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분리공개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각 징벌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및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두12785

## 회의록의 비공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각 참석위원의 발언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어 **자유로운 심의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청을 다소 후퇴시켜서라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되 그 구체적인 비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비밀의 범위를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 취지, 특히 학교폭력법 제21조 제3항이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두2913

독립유공자 등록의 요건인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그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헌법재판소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이와 아울러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 위와 같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 및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심사 결과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신청당사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심사위원들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이 사건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알권리의 보장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두20301

## 심의회 발언자 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회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02두12946

## 심의위원 신상정보 공개

사면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비추어 보면 특히, **공무원이 아닌 4인 이상의 위원들이 광범위한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에도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그 경우에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염망으로 탄생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의사결정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원의 명단과 약력 등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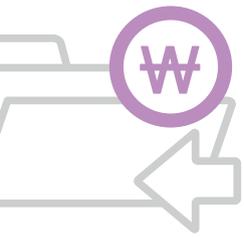
검찰인사위원회는 외부 여론이나 로비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인사가 임박한 인사대상자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시도가 있거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론에 노출됨으로 인해 위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후에는 인사와 관련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도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개연성이 높고, 결국 위원회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제고해야 할 이익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명단과 활동기간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영향을 받는다는지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마친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직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까지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 행정심판위원회 09-17315

설사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역할, 취지, 구성 및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단공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위원들로서는 심의 결과에 부담과 책임을 덜 느끼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이익보다는,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더라도 공개를 통하여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이 사건 정보에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대법원 2007두1798

## 지출 증빙 중 개인정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 중에는 간담회, 연찬회 등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피고가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최종수령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사참석자와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조직운영, 홍보, 격려 등 위 각 추진비를 지출하는 목적 달성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권자가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위 각 추진비의 특성상, 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할 경우 **시정운영에 필요함에도 금원을 지출하지 못하거나 공개를 의식하여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 지출 증빙 중 공무원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두8050, 대법원 2003두8302 등

## 지출 증빙 중 법인이나 단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비공개정보로 하여 비공개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가 피고들로부터 위 격려금 등 금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 영업상 이를 수령한 경우, 그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두9391

법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9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두8302



## 사업 관련 정보

### 협약서상 비밀유지의무

사업 실시협약서 제87조 소정의 비밀유지의무(협약의 해지나 종료 후 5년 동안 정보비공개)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들어 정보를 비공개함은 위법하고,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 공사 업종별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

이 사건 1, 2단계 공사는 그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고, 실시설계적격자에 의하여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이란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하기에 앞서 입찰대상자 및 적정입찰가격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배정을 하기 위하여 특정 공사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에 대하여 산출하여 놓은 것으로서 이는 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통상인바**, 이른바 턴키방식의 사업의 경우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 1, 2단계 공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는 등으로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입찰과정에서의 공**

정성 및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관련 자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미 분양이 종료된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같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4602, 대법원 2006두20587

## BTL 사업 추진현황 및 협약서 일체

이 사건 정보는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의 제반 조건에 관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영업상 비밀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출자자 및 출자비용, 재무모델 등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외부인으로부터의 방해나 간섭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개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공익성 즉, **사회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시설에 대한 것인 점, 민간투자법 및 그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설 준공 후 유지·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시행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주무관청에 대하여 감독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는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 등의 재정지원과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조치 및 조세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 협약 체결 이후의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가진 실시협약의 체결을 단순한 사법적·일반적 계약관계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집행되는 점**, 사업시행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향후 20년간 사회기반시설인 학교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및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예외적인 공개 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업에 관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사 위 정보의 일부분이 위 조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단서 나목 소정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 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

참가인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도로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피고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두24647

## 도시정비법 관련 정보의 공개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조합원명부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본문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라고 볼 **이 타당**하고, 재개발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해석례 12-0428

**조합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면결의서의 공개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해석례 11-0324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해석례 13-0110

## 업체 행정처분 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인 단서조항은 조문에 직접적으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 중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인 바, 이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단서조항인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2012-51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행위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국민이 공표대상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표목록과 목록에 따른 항목으로 표준화하여 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표 대상 정보목록)을 마련하여 노래연습장과 같은 문화유통업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공표대상 정보로 선정하고 원칙적으로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외의 타 행정청에서는 그러한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의 업소명과 소재지,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070



## 부존재 정보

### 정보 보유 및 폐기의 입증책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관리하던 위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1985. 8. 8. 제정되어 2002. 4. 4.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으로 변경되면서 폐지되고, 위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은 1989. 9. 12. 제정되어 2002. 3. 28.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으로 변경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법규의 폐지는 그 적용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제 폐기하여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운영지침이나 공급규칙이 폐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위 문서들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 위 각 정보를 한 때 보유·관리하고 있던 피고가 위 각 정보가 폐지된 이후 **그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존기한의 경과 등으로 실제로 폐기하여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두12707

### 정보의 가공 의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두4309, 대법원 2009두600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나, 공중연결통로 허가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도면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별도로 취합·가공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공중연결 통로 허가현황에 대해 별도의 취합·가공이 필요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4-200



##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 소 제기를 위한 정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관련사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분서 비공개 결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정보들 중에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 중 **참고인의 주소지**는 원고가 **참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고, 관련사건이 고소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인지사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진 뒤여서 **그 주소지 공개로 인해 침해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현재 소제기 된바 없다 하더라도 **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정보 역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참고인의 주소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반면, 참고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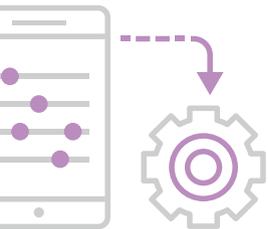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20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그와 관련된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협의 등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가 원고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B 등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28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항 단서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966



## 정보의 공개방법

### 공개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권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등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6두44674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개방법을 열람공개 또는 존부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알 권리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방법에는 열람공개 뿐만 아니라 사본 교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파일의 교부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③, ④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3423

## 널리 알려진 정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13101, 대법원 2005두8733 등

## 전자문서로 통지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위 규정들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두17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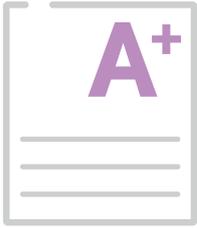
## 타 공시제도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한편 그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그 내용, 특히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체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에서 위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그것이 주택의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의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므로 정보공개법에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4602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비용 및 그 내역까지 공개하여 분양가 상한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데 있을 뿐 그 이외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들이 분양가격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2-402



## 시험 관련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비공개 조항의 입법취지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입법취지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그 직무의 속성에 반하고 중극적으로는 더 이상 당해 직무의 존립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업무와 관련된 정보 중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기밀성 등을 요하는 대인적·주관적 평가영역에 속하는 정보는 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36

### 문제은행식 시험문제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시험에서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되 한번 출제된 문제를 다시 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문항을 축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년 많은 수의 문항을 개발하더라도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들어 **문제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써 수험생 일반에 의한 출제오류의 시정 가능성과 이 사건 시험행정의 투명성의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의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두15936

## 출제위원 출제방식 시험문제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 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른 한편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배제될 경우 기출문제와 다르거나 변형된 형태로의 새로운 문제를 창안하여 출제할 가능성이 없는 등 또 다른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여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 문제의 출제에 있어 다른 시험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하여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비공개에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피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오류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그러한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이 이미 40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어서 새로운 문제의 출제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용은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8 정보공개 사례집



## 제2장

### 정보공개 분야 결정례

법령상 비밀·비공개	42
국방 등 국익침해	63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88
재판 관련 정보 등	113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133
개인의 사생활 보호	170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207
특정인 이익·불이익	279
정보부존재 등 기타	292

# 0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법령상 비밀 · 비공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

대법원 2004두12629

**판단기준**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함

대법원 2010두2913

법률의 위임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예규)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근거로 삼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2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거나 적어도 비밀 또는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 또는 비공개의무를 정한 법률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 ① 아들이 수용된 기관명, 수용기간, 아들을 아동보호시설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문서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주 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sup>1)</sup>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은 2014. 6. 경 원고의 동의하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인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아동학대 관련 문서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62조, 아동복지법 제65조가 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아들 ○○○에 대한 보호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적정성 및 판결의 정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의

1) 목록 1. 아들 ○○○이 수용된 기관들과 각 기관에 수용된 기간  
2. 아들 ○○○을 아동보호시설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문서

법정대리인이자 아버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알려지더라도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정보공개 원칙,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이하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거나 적어도 비밀 또는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 규정을 의미**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 또는 비공개의무를 정한 법률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등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들에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복지법 제65조는 아동복지사업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각 조항은 비밀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②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9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2호증, 강제3호증(을제4호증과 동일), 강제4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5 내지 6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제2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2. 5. 그 4/10 지분에 관하여, 2004. 10. 8. 그 1/10 지분에 관하여, 2005. 12. 30. 그 5/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2005. 12. 30.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C가 피고에게 2004. 12. 27.부터 2006. 2. 10.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205호)을 본점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셨으나(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08. 4. 17.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추후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4. 2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08. 5. 6.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 유지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와 관련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 및 근거법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라 할 것이다).

##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법인사업자(C)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취지는 세법상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거나 과세관청의 국세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업장을 등록하여 부정한 거래를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소정의 과세정보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정보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관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징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될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다.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본문,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소정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소정의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소정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정보비공개결정취소 | 대법원 2006두11910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의미

[2]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2003헌바81

**판시사항** [1]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자유롭고 활발하며 공정한 심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리·의결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다.

행정심판회의록을 당해 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장래 있게 될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들의 발언도 재결확정 후에는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토론 및 심리·의결이 방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원의 발언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확정 후에도 비공개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위원의 발언내용을 선별하여 그 중 일부를 부분공개하는 형태의 입법을 채택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상의 비공개제도 외에 달리 청구인의 알 권리를 덜 제한하는 입법수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구비하고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항이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의 지정은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및 위임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문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주 문**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가. 사건의 개요

##### (1) 2003헌바81 사건

(가) 청구인은 2001. 12. 24. 경상남도지사에게 1970. 7. 생산된 양산군 공유재산(귀농정착개간사업 토지) 도지사 양여승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2. 1. 11. 위 문서가 공문서보존기간중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1979. 6. 15. 총리령 제223호)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그 생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1.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2. 5. 2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게 되자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2219호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는 별도로 위 재결의 위법, 부당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3. 4. 28. 법제처장에게 위 행정심판에 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법제처장은 2003. 5. 27. 위 회의록이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호에서 비공개정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3. 6. 3. 서울행정법원에 법제처장을 상대로 위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3구합16457호)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3아1109)**을 하였으나, 2003. 9. 16. 위 법원이 위 위헌제청신청 및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2003. 10. 1.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2003헌바89 사건

(가) 청구인은 2002. 6. 3. 양산시장에게 1961년 양산시 웅상면의 귀농정착 개간사업용지 매수 조서 원안 등 8개 항목의 귀농정착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2. 6. 17. 공개거부처분을 받고, 다시 2003. 3. 24. 양산시장에게 양산시 웅상면의 귀농정착 사업용지 매수 계약 체결 보고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3. 4. 4. 역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각 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 6. 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2002. 6. 17.자 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각하하고, 2003. 4. 4.자 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행정심판에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불공정한 심리, 의결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2003. 6. 11.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행정심판에 관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3. 6. 17. 위 회의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위 비공개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3구합1736호)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3아145)**을 하였으나, 2003. 10. 16.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3. 10. 23.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심판대상 조문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2) 관련조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2003헌바81, 89 공통)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데,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기본 법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들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동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회의록도 공개대상정보가 되어야만 심리 의결에 참가한 행정심판위원들이 자신들의 심리 의결내용이 공개될 것을 의식하여 외부 및 위원들 상호간의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성 있

고 공정한 심리의결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재결이 있는 후에는 심리의결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더 이상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에서도 행정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으면 심판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이 행정처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까지 심사하는 준사법절차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오히려 그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인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막연히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재결이 내려지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심판회의록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인 정보공개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나. 위헌제청기각 이유의 요지(2003헌바81, 89 공통)

현대 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도 다른 청구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기본 법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제6조 제1항으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제1호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는바,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에서는 비공개정보의 내용으로 제1호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제2호로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제3호로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심리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준 사법적 절차이므로 그 심판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공정성이 고도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회의록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위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들을 논의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서 이른바 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심판절차 종결 후에라도 공개할 경우에는 심판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방해할 소지가 많아 행정심판사건 처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심판업무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다. 법제처장의 의견요지(2003헌바81)

법원의 위 기각 결정의 이유와 대체로 같다.

#### 라. 경상남도지사의 의견요지(2003헌바89)

행정심판회의록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 심사·결정 과정에서 발언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 표명이 외부에 공개됨으로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며 위원들의 의견개진 자제 등으로 위원회 회의의 진행 곤란과 나아가 위원회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더 큰 공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비공개는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 3. 판단

#### 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조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의 지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의 대표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정보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행정심판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인바, 이 사건 조항이 위와 같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 (2)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및 제한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8-189).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선언한 것인데, 알 권리는 그 밖에도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판례집 3, 246-247).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 (3) 기본권 침해 여부

(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고(행정심판법 제22조), 증거조사(동법 제27조, 제28조)를 거치는 등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심리(동법 제26조 제2항)를 마친 다음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게 된다(동법 제31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자유롭고 활발한 심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리·의결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공개된다면, 위원이거나 출석자는 장차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원회 심리·의결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

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제되지 아니하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의견이 그대로 외부에 제공될 경우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정당한 권위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을 구비하였다.**

(다)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에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심리·의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것이 명백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원회의 재결 전후를 불문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비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은 단순히 현재 진행 중인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심판회의록을 당해 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장래 있게 될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발언도 재결확정 후에는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토론 및 심리·의결이 방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들고 있는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장래의 행정심판도 포함하는 것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절차의 경우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헌법 제109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본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도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

고는 공개하나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이와 같이 사법절차에서 합의 또는 평의에 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가 종료되더라도 비공개원칙을 유지하는바,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행정심판제도에 있어서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은 재결서에 기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결이 종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비공개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정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신설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분공개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이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전체 행정심판기록이 아니라 그 중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국한된 것으로**, 위원들의 발언을 사안 및 내용에 따라 또는 그 발언을 한 위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그 중 일부를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전부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25조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결을 행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비록 당사자에게는 위원회 위원의 발언 내용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위원회 재결의 공정성 및 정당성에 관한 사후 심사가 위원의 발언 내용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상의 비공개제도 외에 달리 청구인의 알 권리를 덜 제한하는 입법수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구비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조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비중과 위 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

량하여 보면 위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조항이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의 지정은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헌재 2001. 1. 18. 98헌바75등, 판례집 13-1, 1, 18),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3 참조).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기본 법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2호 내지 제8호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비공개함이 상당한 정보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은 형식적으로 위 법률 위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5호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5호와의 유기

적 관계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제5호의 취지는 행정내부에서의 자유롭고도 솔직한 의견의 교환을 확보하고, 내부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주민에게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나 일부의 자에게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회피하며,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중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는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거나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가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한편, 수권의 목적으로부터 수권의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로써 수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수권의 목적, 즉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건 조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 확보가 입법목적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의 위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그 비공개대상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및 위임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0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방 등 국익침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께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판단기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



# 1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

**판시사항**   甲 변호사단체가 ㉠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등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변호사단체가 ㉠부장관에게 2015. 5.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수행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결과에 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부장관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시가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주 문** 1. 피고가 2015.7.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7.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7.31.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 정도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외교관계에 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인정 사실

1) ○○○○시는 2003년경부터 약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계속하여 허용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검출되었다.

2) □□부는 2013.6.17.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 미군사령부와 용산 미군기지 인근 오염 사건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한·미 양측 관계자와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EJWG)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하였고, 위 실무협의체는 3차례에 걸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를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환경기술전문가 5명을 선발해 2015.5.26. 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 18 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하였다.

4) ‘SOFA 환경분과위 설립에 관한 SOFA합동위원회 각서’에 의하면 환경분과위원회의 공식 합의록 및 기타 문서는 한·미 양국의 공식 문서로 간주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는 환경분과위원회 및 그 구성원이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5) 주한 미군사령부 측은 2015.11.24. □□부에 ‘이 사건 정보가 미완성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오

해를 부르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한·미 동맹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6)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로서 향후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비록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 사건 정보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임을 들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가) 관련 법리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이는 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한·미 양국이 구성한 실무협의체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한 협의 결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② 2003년경부터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시가 7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그 주변 지하수 정화작업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허용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검출되어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③ **주한 미군 측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밝힌 입장은 아니지만,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가 종료된 후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2016.4.19.자 준비서면 8쪽) 그에 앞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협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1차 환경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마당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의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양국 간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인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0두 14268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3차례에 걸쳐 예정된 검사 중 1차 검사 결과에 불과하고, 그 후 피고가 1차 검사 당시 선정된 18곳의 지하수를 재차 채취하여 실시한 2차 검사 결과는 이 사건 정보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여론이나 시민사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방법, 범위와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주한 미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수 있고, 그 경우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하수에 대한 수질 조사는 강우나 계절의 영향에 따라 실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가 최종적인 실험결과가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실험을 종합하여야 비로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더하여 1차 검사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2차 검사 결과까지 함께 공개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용산 미군기지 토지오염과 같은 사안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당초 계획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 생략

## 2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

정보공개청구재결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

### 판시사항

[1]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여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훈령)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하는데,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정

문 초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그 실질적 내용상으로도 위와 같은 Ⅲ급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정문 초안이 적법하게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위 협정문 초안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우리나라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상 조약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단일의 문서 또는 둘이나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국가 간에 문서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단지 양국 간의 협상의 편의를 위하여 협상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정부는 미국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한·미 FTA’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6. 5.경 총 22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2006. 5. 19. 미국과 협정문 초안(이하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라 한다)을 서로 교환하였다.

나. 이에 원고 B은 2006. 5. 30.에, 원고 A은 2006. 6. 1.에 **정부와 미국이 제시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 전문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피고에게 각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6. 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한·미 양국정부는 협정문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의 최종합의문은 타결 즉시 공개하고, 협상 중 생성문서는 발효 후 3년간 비공개 취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B의 보좌관인 ○○○이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의 모든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이후 권리구제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B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B이 2006. 6. 26.경 피고에게 한·미 FTA 통합협정문의 열람을 신청하였고, 원고 B의 보좌관인 ○○○이 2006. 6. 28. 약 3시간 동안 외교통상부 6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결합한 통합협정문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

령'이라 한다)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지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시의 사용목적 이외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도 원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B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B측이 피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거나 그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바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통상교섭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실리적이고 냉정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3) 한·미 양국이 이미 서로 협상을 개시한 상황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은 이미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이미 한·미 양국이 본 협상에 이용하고 있는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정부는 2006. 2. 3. 미국과 함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006. 3. 6. 서울에서 한·미 FTA 제1차 사전준비협의를 개최하여 향후 협상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 초안 교환시기 등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6. 4. 17.과 같은 달 18.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를 개최하여, ① 협상분과 구성문제 : 상품무역분과(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의 관세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농업분과(농산품의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등 17개 분과의 설치, ②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는 협상 발효 후 3년간 비공개(다만, 정부관계자, 국회 국내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수렴 및 정부 입장 수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보안준수를 전제로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 ③ 협정문 초안 교환시기(5. 19. 이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 정부는 2006. 5. 19. 미국과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서로 교환하였는데,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교역 관련 양국 간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위생검역 논의를 위한 접촉선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의 관세인하 및 철폐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조치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3) 정부는 2006. 6. 5.부터 같은 달 9.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17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으나, 농업분과, 위생검역분과, 섬유분과, 무역구제분과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입장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통합협정문은 추후 작성하기로 하였다.

(4) 정부는 2006.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서울에서 제2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한·미 양국이 상품분야에 대한 양허안 작성의 기본원칙에 합의한 반면 농산물분야에 대한 양허안 기본원칙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각각의 방식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여 2006. 8. 중순경에 일괄교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생·검역분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다만,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이 지속)하였다.

(5) 또한, 정부는 2006.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2006. 10.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제4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2006. 12. 4.부터 같은 달 8.까지 미국 몬타나(빅스카이)에서 제5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2007. 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제6차 한·미 FTA 공식협상을 각 개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한 통합협정문의 작성 및 최종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6)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의 주요 내용과 한·미 FTA 협상결과를 보도자료로서 공개하고 있고, 원고 A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자격으로 농림부에 요청하여 2006. 8. 10.과 같은 달 14. 농업협정문안을 열람한 바 있다.

(7) 국회는 2006. 7. 말경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미 FTA특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한·미 FTA특위에서 정부로부터 한·미 FTA 관련 주요 쟁점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고 있다.

(8) 한편, 피고는 한·미 FTA특위를 위해 국회 내 한·미 FTA특위 열람실에 회의가 개최되는 주에는 회의 개최 2일 전부터 개최 다음날까지 4일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주에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 사건 각 협정문을 포함한 협상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주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안업무규정상의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하는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제4조에서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비밀’을 Ⅲ급 비밀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여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 훈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미국과 사이에 FTA 체결을 위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그 실질적 내용상으로도 위와 같은 Ⅲ급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적법하게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제2차사전준비협약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는 넓은 의미에서의 조약이며 조약준수의 원칙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상 조약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단일의 문서 또는 둘이나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국가 간에 문서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단지 양국 간의 협상의 편의를 위하여 협상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통상교섭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외교관계에는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외교관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정부가 미국과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작성·교환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속성상 한·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한·미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의 정보공개가 일반국민들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은 청구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반면 국회법 제122조 제1항, 제3항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하여야 하며, 제128조 제1항은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국회법 제122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서면질문권이나 제128조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임을 전제로 일반국민보다 정보공개 범위가 더 용이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한·미 양국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자국의 입장을 담은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상대국에 제시하고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협상을 개시하여 협상진행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협상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쳐 단일한 통합협정문을 만들며,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수정제의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상품의 관세 인하·철폐, 무역구제,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등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한·미 양국의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을 담고 있어 한·미 FTA 체결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 기업 등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 기업 상호간에도 이해관계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하여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협상 전략 수정에 대한 요구로 협정문 내용이 당초 전략과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상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업무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협정문 초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3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관련 9개국과 체결한 개별 합의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046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년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위 국가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9개국이라고 한다)을 교섭상대방으로 진행한 쌀관세화유예연장을 위한 협상(이하 이 사건 협상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상의 결과로 작성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공개결정을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비밀사항으로 분류되어 있고 외교관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여 비밀로 분류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는 통상교섭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의 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실익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WTO 검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 나. 관계 법령

#### 생략

###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관세화유예라는 특별대우를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인정받았으나, 2004년에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이 사건 9개국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위 협상을 통해 합의된 수정이행계획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2) 피고는 위 협상 당시 위 수정이행계획서 이외에 이 사건 9개국과 개별적인 합의내용을 담은 합의문(이 사건 정보)을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안업무규정상 iii급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4) 피고는 2005. 4. 2.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가별 후속합의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기술적, 절차적 사항 관련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개국 공통)국별쿼타 이행 관련 국제적인 상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3회유찰시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절차

- (미국) 일부 수입물량의 소비자 시판과 관련 구체적인 공매절차 및 수입규격, 협상결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 간 연례 양자협의개최
- (중국) 협상결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례 협의개최 및 입찰규격에 있어 중국측 관심 사항 반영 노력
- (호주) 일부 물량에 대해 상반기 중 입찰 실시

#### ■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관련

- (중국) 양벧 등 중국 관심품목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절차의 신속한 추진, 농수산물 조정관세품목 축소 또는 관세인하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
- (아르헨티나) 등, 식물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닭고기, 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간 협의
- (캐나다) 관세화유예기간 동안 사료용 완두콩, 유채유 관세 인하
- (인도, 이집트)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 원조용 쌀 국제구매가 있을 경우 인도 및 이집트 쌀 우선 구매

(5) 농림부는 2005. 4. 18.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쌀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이라는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3. 이행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사항

#### 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개국 공통사항

- 국가별 쿼타는 국제 상관행에 따라 경쟁 입찰 실시
- 국내 수요 및 과거 교역실적을 고려하여 입찰 실시
- 비정상적인 고가 입찰시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이 가지며 3회 유찰시 당해 물량은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
- 국별 쿼타는 당해연도에 소진되며 이월불가

#### 나. 미국

-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공매기관 (조달청유통공사 등)을 지정
- 적절한 보도매체를 통해 공매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공매계획에 공매일자, 공매물량, 품질, 원산지 및 인수도 조건 등을 포함
- 당해 연도내 공매완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장기 저장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내 공매
- 수입쌀 입찰규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을 적용
- 협상결과 이행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 다. 중국

- 협상결과 이해 점검을 위한 연례 협의 개최
- 장립종 수입쌀 입찰시 입찰규격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 라. 호주

- 수입쌀 운송선박의 한국 국적선 이용의무제도가 01년에 이미 폐지 되었음을 확인
- 07년 이후 연 1회 이상 상반기 입찰 실시
-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관련 정보 보호
- 상기 합의는 관세화유예 기간동안 적용

### 4.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 가. 중국

- 03. 11월 접수하여 총 8단계 중 3단계까지 진행중인 양벚(체리)은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
- 04. 8월 접수된 사과, 배, 룡간(용안), 여지(리치)에 대해서는 4개 품목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수 없으므로, 양벚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 이후 중국측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속히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
- 이미 양국간 논의가 진행중인 식물검역 정례협의회 출범에 노력하고, 정식출범이 지연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하여 양국의 검역 당국간 회의 개최를 추진
- 중국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trq품목 입찰절차 관련 사항은 한중 경제공동위 등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중국측 관심 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
-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98년이후 대상품목 축소와 세율 인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측이 제시한 관심품목에 대해 02년, 04년, 05년 반영 내역을 명기
  - \*제외 3개 품목 : 활미꾸라지, 냉동명태피레트, 면타올
  - \*감축 3개 품목 : 활농어, 새우젓, 혼합조미료, 면직물, 견직물
  - \*제외 3개 품목 : 면직물, 견직물, 견사
  - \*감축 3개 품목 : 활농어, 냉동낙지, 표고버섯
  - \*제외 1개 품목 : 냉동낙지
  - \*감축 7개 품목 : 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새우, 표고버섯, 당면, 메주
- 향후 한중 통상협력 증진의 필요와 국내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양자 채널에서의 협의를 통해 조정관세 대상 품목 축소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

#### 나. 아르헨티나

- 검역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가금육(2단계), 오렌지(5단계)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WTO협정에 의한 모든 필요한 자료가 접수된다는 전제하에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 쇠고기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 착수
- 위험평가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르헨티나는 한국 검역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입 위험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검역 전문가 상호 방문 추진
  - \*아르헨티나와의 합의서는 05. 1월 작성되었으나 05. 4월 현재 3개 품목 모두 아르헨티나측이 위험평가 관련 자료 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아르헨티나측 검역전문가 2인의 방문은 기 완료(05. 3. 18~3. 26)

#### 다. 캐나다

-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은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적용 물량은 2005년도에 45만톤을 유지하고 2006년 이후에는 동수준 유지 노력
- 유채유박(0%), 유채 종자분(3%)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유채조유(10%→8%), 유채정제유(30%→10%)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 \*유채유 내제품목인 대두조유와 대두정제유의 실행관세율은 모두 5. 4%임
- 상기 사항은 DDA협상결과와 관계없이 관세화유예 기간동한 적용

#### 라. 인도, 이집트

- mma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
- 식량원조의 성격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 사건 정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여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iii급 비밀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iii급 비밀로 분류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참조),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개별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정보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비밀로의 분류는 그 자체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결과 그러한 분류행위 이후 일정한 불복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룰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여부에 관한 심사권을 갖고 있는 법원으로서 선결문제로서 분류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그러한 비밀로의 분류를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비밀 분류의 행정작용은 합목적성을 갖느냐의 여부가 그 타당성의 중심점에 오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급적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청에게 비밀분류에 있어서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부터 명백하게 잘못된 분류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행정청의 위와 같은 iii급 비밀로의 분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적법하게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통상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외교관계에는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외교 관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을 통하여 작성되는 수정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수정이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개별국가와의 별도의 합의는 각 개별국가마다의 사정과 협상태도에 대응하여 상대적인 입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정한 이익의 양보 위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성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개별국가 사이의 합의를 담고 있다. 그 결과 개별국가 사이의 여건과 상황이 달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양자합의의 속성상 개별국가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합의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표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기업의 경영과 영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표되어 투명하게 됨으로써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일정한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이 보호됨으로써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지켜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 있어서도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합의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표되어 투명하게 됨으로써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일정한 통상에 관한 합의 등이 공개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이 보다 잘 지켜질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교섭에 관한 사항 중 일정부분은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그 일부는 국가 이익을 위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통상교섭에 관한 합의 사항의 전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공개와 관련하여 투명성 부족의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나 이후의 합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보의 성격에 비추어 공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라고 해석된다.

(라)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가 wto의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나,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요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보도자료로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요지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합의내용 전체가 완전하게 그 전모를 드러내어 공개된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서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공개정보로서 관리되어야 할 요청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요지가 공개됨으로써 정보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상당한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여 진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0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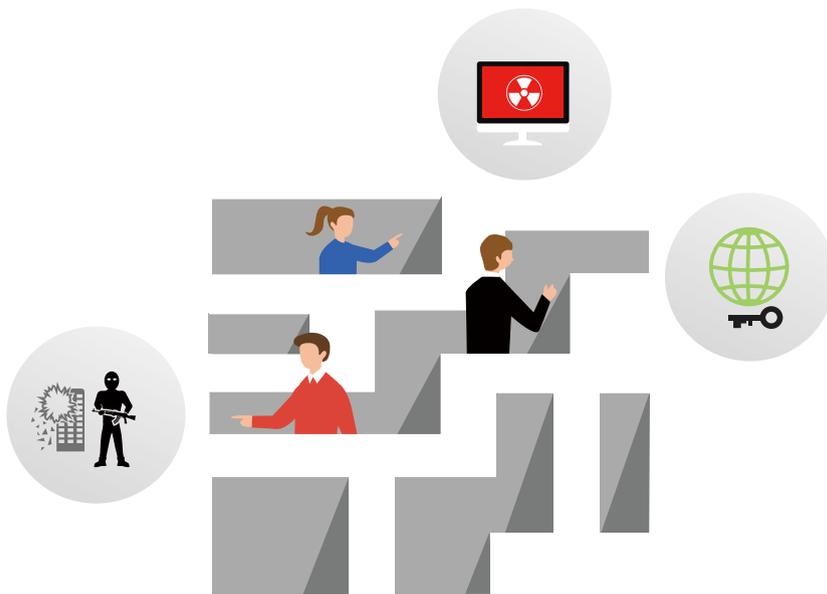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판단기준** 제3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1두335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466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하며,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 1 ○○시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행정처분 현황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070

**판시사항**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乙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乙 시장이 그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 주소’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5.6.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5.5.28. 피고에게 ○○시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업소명, 도로명 주소)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적발일시,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소재지, 업소명, 세부주소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6.8. 원고에 대하여 관내 현재 '노래연습장 현황(업소명, 도로명주소), 행정처분의 적발일시,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소재지(읍면동)'에 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주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6.12.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6.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의 업소명 및 소재지 세부주소는 공개될 경우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처분 내역 공개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일반 법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6조에서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우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고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국민이 공표대상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표목록과 목록에 따른 항목으로 표준화하여 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표 대상 정보목록)을 마련하여 노래연습장과 같은 문화유통업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공표대상 정보로 선정하고 원칙적으로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부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외의 타 행정청에서는 그러한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의 업소명과 소재지,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영업승계자가 영업승계로 인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까지 승계하게 되므로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소의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핵연료 공장의 증설 관련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서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014

**판시사항** 공공기관인 甲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공기관인 甲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회사가 위 협약서에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주민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甲회사가 주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민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여 핵연료 공장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甲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乙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6.19.자로 원고에게 한 공개거부처분 중 '피고와 ○○ △△△구 A동, B동, C동, D동 각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사이의 2013년 상생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위 4개동주민자치위원회의 직책과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 6. 19.자로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자력연료의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회사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 △△△구 □□동에 있는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거주민들의 반발여론에 부딪히자 2013.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공장 인근의 ○○ △△△구 A동, B동, C동, D동 등 4개동(이하 '이 사건 주변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 위 핵연료 공장을 증설하되 이 사건 주변지역에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던 사람 중 한 명으로 2014.6.8.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와 그 외의 개별적 협약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6.19.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정한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①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상대방인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서 협약내용에 관한 비밀 준수를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약서는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한편 주민 대표의 성명 등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②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 이외에 개별 협약에 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요컨대, 그와 같은 개별협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다).

##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채용 우대에 관한 정보를 주민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해 그 혜택이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주민들에게만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 대표라는 신분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위원의 직책과 성명은 정보공개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시 △△△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직책과 성명은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위원의 직책과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비공개를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변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하면 이 사건 지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동을 할 것이고, 이럴 경우 피고는 공장 증설을 위해 인접 지역 주민과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하거나 증설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협약에는 지역 주민의 채용 배려라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어 이 사건 주변지역의 인접 지역 주민들이 같은 내용의 채용 배려를 요구할 경우 피고의 인사관리에 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협약서 중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직책 및 성명 등은 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한 경영기법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피고는 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적인 협약 체결이 강제된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협약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협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의 경영

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의 원본을 열람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서를 ○○당 소속 국회의원 소외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미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서 전부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핵연료 공장 증설반대운동을 통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소송요건과 관련한 직권 판단 사항

–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2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부분의 적법 여부 –

직권으로 살펴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두7087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이외에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이외의 개별적 협약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라. 본안에 관한 판단

–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1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지장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洞)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일 뿐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협약에는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할 경우에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인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인 피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③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주민만이 이 사건 협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금전적 지원의 이행 과정에서 특혜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이로 인한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협약서의 비공개가 오히려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④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찬성이 핵연료 공장 증설의 필수적 요건도 아니므로 **다른 지역의 주민이 증설에 반대한다고 하여 피고의 증설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현저히 커진다고 피고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사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공장 증설의 반대를 막기 위해 이행 불가능한 지원을 약속해줘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공개될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같은 내역의 지원을 해야 해서 결국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 공개될 경우 피고 업무의 공정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인지 여부 –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11.26. 선고 2004두4482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밝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협약서는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주민 대표의 성명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인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는바, 추가된 거부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초 거부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와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들을 살펴보아도 추가된 처분사유는 피고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공정한 업무 수행의 지장 초래를 내용으로 하지만 당초의 처분사유는 지역 주민의 재산 보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정보보호, 피고의 경영기법에 대한 비밀의 보호를 내용으로 삼고 있어 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의 사유와 이후 추가한 같은항 제5호의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추가될 수 없다.**

(나) 설령 추가된 위 처분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에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의 채용 우대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채용 우대가 협약에서 정해진 대로 실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하**

는 것이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주민만이 이 사건 협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채용 과정의 특혜나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논쟁을 더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 –

주민자치위원회는 동(洞)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일 뿐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핵연료 공장 증설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반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찬반을 둘러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반대 주민들에 의한 위해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직책과 인적사항을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

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할 여지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는 것이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에게 보다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약정하였다고 해서 특별히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성이 더 있다고 볼 이유는 없는 점, 피고가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개금지약정을 불이행한 것이 된다고 해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단서나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열람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이는 점,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협약서의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개요만 공개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서 자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

가 있는 점, 피고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 이외의 개별적 협약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협약 부분의 공개거부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③ 특정 방화사건에 관련 수사기록 전체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2824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검찰청 2011형제○○○○호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1 목록의 '비공개(기각부분)'란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검찰청 2011형제○○○○호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검찰청 2011형제○○○○호 사건의 피의자 B의 변호인이고, 위 사건은 B이 방화로 C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인데 B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어 종결되었다.

② C는 2011. 10. 10. B의 유족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수원지방법검찰청 2011형제○○○○호 사건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고 하고, 이에 포함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전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및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하여 열람·등사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만을 처분사유로 삼았으나, 제1심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①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개될 경우 B의 유족들이 참고인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피해자 C가 B의 유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B의 유족들을 위한 방어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또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의견서, 수사보고, 압수관련 서류 등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이다. 이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관련자들의 신상 등 개인 정보 뿐 아니라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사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정보공개법은 위 규칙과는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설령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수사기록은 피의자 B이 피해자 C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누가 방화를 했는가에 관한 수사기록으로서, 그에 포함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4,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관하여 규정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8. 7. 22. 선고 2008헌마496 결정), 피고는 위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2) 추가된 처분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처분사유 추가의 가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 4호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3, 4, 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바, 위 규칙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 규칙 제22조 제2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3, 6호와, 위 규칙 제22조 제4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호와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3, 4, 6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헌법상 권리와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수사기록의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기록에 있는 서류들은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 목격자, 피해자의 처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 등의 문서들이다. **이러한 문서들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B의 유족들이 이 사건 수사기록에 드러난 참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

C가 2011. 10. 10. B의 유족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위 소송의 자료로 사용되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사기록에 담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또한 피의자 B이 사망하여 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로써 수사가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범죄 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수사기록의 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참고인 등 관련자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는바, ①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그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는 반면, 공개된다고 하여 새삼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크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나, ② **그 나머지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는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비공개(기각부분)'란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비공개(기각부분)'란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4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 수사기록 전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284

**주 문** 1. 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공개청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비공개대상정보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공개청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00의 공갈미수 등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00고단00호)에서 김 00을 변호한 변호인 이자 주식회사 00000(이하 '00'이라고 한다)의 회원정보유출 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이다.

나.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홍0은 2008. 1.경 00의 웹서버 중 하나인 이노믹스 서버를 통하여 00 회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무렵 김00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00 회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받은 후 2008. 1. 31. 및 2008. 2. 1.경 00의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00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며, 2008. 2. 12.경 00의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판매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홍○과 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09. 2. 9. 홍○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처분을 하고, 김○○에 대하여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은 2009. 5. 26. 김○○에 대하여 공갈미수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9. 8. 12. 김○○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25. 김○○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김○○의 재판확정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4. 18. 피고에게 **김○○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7. **김○○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및 김○○이 제출한 문서만을 공개**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기재 공개청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의 정보보안시스템 관련 정보가 누출되어 ○○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의견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등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기소중지 상태인 홍○ 또는 잠재적 해킹범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고 모방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점, ③ 이 사건 정보 중 김 ○○, 최○○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공개하는 것은 위 각 진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나. 원고의 주장

홍○이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당국에 의해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대한민국 경찰의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점, 홍○의 해킹 수법은 대중에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다.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위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 회원들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서버의 보안시스템 등 ○○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시스템의 기술적 사항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병합) 사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정보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정보보안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 정보보안시스템의 허점이 이미 드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보완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의견서, 수사첩정보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사실과 을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당국이 홍o을 검거하여 oo의 서버에 침입한 경로 및 방법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한민국 경찰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당국이 조사한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민국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일 전에 홍o을 인도받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수사결과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정보 중 홍o이 oo의 서버에 침입한 경로 및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도의 해킹기법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유사범죄에 사용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침입경로 및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oo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이 공익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① 순번 1번 기재 의견서에는 김oo과 홍o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록기준지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② 순번 8번 기재 진술조서와 순번 10번 기재 진술조서에는 각 진술자(김oo, 최oo)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자택전화 및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③ 순번 8번 기재 진술조서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앞·뒷면 사본(제572면)과 주민등록증의 앞·뒷면 사본(제573면)이 첨부되어 있고, ④ 순번 10번 기재 진술조서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앞·뒷면 사본(제594면)이 첨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 각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2. 기재 비공개대상정보 기재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정

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04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하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10두7048,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04두12629

그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판결 전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999

**판단기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05두1569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10두24913),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됨

부산고등법원 2010누5615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하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임.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대법원 2010두7048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09두12785



## 1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44

**판시사항** 갑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갑이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르면 갑이 등사(복제물 제공)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없는 한 을 검사장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위 정보의 성격, 수집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5. 11. 12자로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3. 6. 4자로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불이행이 위법함을 확인한다. 공개결정 이후 피고가 공개를 불허할 경우 공개를 할 때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판결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국한된다.

##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 한다)에 관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검사가 원고를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것인데, 그 속에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녹화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등사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공개할 경우 검사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설령 공개하더라도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등사까지 허용하더라도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 제출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 나.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영상녹화물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물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검사의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현행법상 진정인에 대한 수사 시 영상녹화물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영상녹화물을 작성하지 않거나 검사가 영상녹화물을 작성할 때에 조사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영상녹화물을 작성하고는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조사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사후적으로 조사자인 검사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공개의 방법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 제2호는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보공개방법의 하나로, ‘필름, 테이프 등에 대하여는 ‘인화물·복제물을 제공하는 방법’(제2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그 사본·출력물을 제공’하는 방법(제4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제1항),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등사(복제물 제공)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피고는 **그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의 성격, 수집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정보의 사용 목적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 시 그러한 제한을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정보를 오용 또는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정보공개방법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sup>1)</sup>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공개방법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법령상의 유의사항이 적힌 문서를 교부하고 그러한 문서의 말미에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을 받는 것까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나아가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 방법 자체를 제한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공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받은 정보를 사후 오용 또는 남용하였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 ② 거짓말탐지기검사 질문표,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16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질문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변경 부분

한편 거짓말탐지기검사에 관한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것이 공개될 경우 거짓말탐지기검사 기법이 노출되어 피검사자들이 검사를 방해·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행동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어 그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질문표’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정보 중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의 주장에 위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병합) 판결 등 참조]

#### 가) 이 사건 정보 중 ‘질문표’

이 사건 정보 중 ‘질문표’는 개별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에 대하여 의뢰된 검사항목의 검사를 위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질문을 담은 문서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거짓말탐지검사를 위한 질문 기술의 패턴이나 방법을 분석하는 등으로 거짓말탐지검사의 기능을 침해하여 검사결과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가 시행한 거짓말탐지검사의 바탕이 되는 유타검사기법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차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향후 원고 등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검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질문표’가 공개되면 원고 등은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말탐지검사에 대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나) 이 사건 정보 중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이 사건 정보 중 ‘검사조사표’는 폐지된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경찰청예규 제469호, 이하 ‘운영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피검사자인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사관이 ‘검사조사표’를 통하여 ‘질문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조사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자체만으로 거짓말탐지검사의 검사방법이나 평가방법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보 중 ‘검사판정서<sup>1)</sup>’에는 검사 경위, 결과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뿐이고(질문 내용 중에는 검사방법상 비교적 기밀성이 떨어지는 사건관련 질문만 공개되어 있다) 거짓말탐지검사

1) 이는 운영 규칙 제28조 제4항 제6호 소정의 거짓말탐지검사 결과보고(회보)서를 의미한다.

의 검사방법이나 평가방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으므로, '검사판정서'의 공개에 따라 거짓 말탐지검사의 검사방법(질문기법)이나 평가방법(자료 해석기법)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위 '검사조사표'와 함께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질문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질문표'에 관한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질문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CCTV 영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631

**주 문**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2013. 4. 14. 09:56경 원고가 운전하던 B 체어맨 모범택시와 C이 운전하던 D250시시 오토바이가 서울 ○○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나. 서울 ○○ 경찰서 소속 담당 사법경찰관은 2013. 9. 11.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사한 다음 '차의 운전자인 원고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C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위 모범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의 견(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였다. ○○○○지방법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3. 9. 26.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시○○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자신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1. 7.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수사기록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위 영상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헌법 제37조의 각 취지와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2008. 7. 22. 선고 2008헌마496 결정 참조). 그렇다면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2) 추가된 처분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 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위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불과하여 거기에 특별히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C의 고의적인 범죄라고 다투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알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이미 원고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 3) 소결론

결국 위 각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입료 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888

###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입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입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2.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5. 피청구인에게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입료 내역(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입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변호인 수입료는 수사 및 재판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입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또한 정보공개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성명에 대해서도 공개하여야 하며, 설령 재판 계속 중이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미 종료된 재판의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체적 사건별로 선임된 대리인 및 수입료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는 단순히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수입료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는 재판의 계속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법인 등에 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1.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 예정인 변호인 수입료 내역  
- 참고 : 위 정보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국선 변호인 제외), 담당재판, 수입료의 금액, 지급일(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상기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의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5.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1. 사건명, 수입료, 수납일이 기재된 이 사건 정보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

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 20587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3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입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

과 그 수입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5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의견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 대법원 2010두7048

**판시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 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와 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수사기록 중 의견서 등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거부처분은 2008. 11. 26. 행하여져 다음 날인 2008. 11. 27. 원고에게 통지되었는데,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 12. 5.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2008. 11. 27.자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청구원인으로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위법사유가 아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2008. 11. 26.자로 행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05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입법취지** 행정내부에서의 자유롭고도 솔직한 의견의 교환을 확보하고, 내부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주민에게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나 일부의 자에게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회피하며,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중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헌법재판소 2003헌바8)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발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함

대법원 2010두24913

**판단기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9두19021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 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6두15936 등

# 1 역사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주 문** 1. 제심판결 중 별지 1 목록<sup>1)</sup>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1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sup>2)</sup>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 1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1) [별지1] 정보목록

1.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 참고 1: 위 집필진 명단에는 집필자별 집필 분야 또는 단원 그리고 소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위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 참고 2: 위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에는 소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피고가 2016.11.28 별지 정보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공개하자 원고는 당심에서 그부분에 관련된 소를 취하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같은 항 제6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중·고등학교용 단일 역사교과서로 채택될 이 사건 역사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 역사교과서의 집필·심의 작업이 완료되기 앞서 그 편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공개 검증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제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84 판결).

##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하고, ㉡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조 제1항에서 정보공개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예외사유는 제3조의 정보공개원칙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작업에 참여한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지 않는 등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한편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가 비밀리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구성의 정당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 **비밀리에 업무가 이루어져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③ 역사교과서 편찬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비밀이 요구되어 은밀히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전문성과 공정성이 검증된 위원들이 관여하여 역사편찬 과정 자체가 다시 논란과 불신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달리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비록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그 학습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공익성이 큰 업무를 담당 한 이상,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가 위 업무를 담당할 만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는 순수하게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⑤ 설사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역할, 취지, 구성 및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단공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위원들로서는 심의 결과에 부담과 책임을 덜 느끼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그러한 이익 보다는,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더라도 공개를 통하여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⑥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중립성 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심의 등이 모두 마쳐진 이후에야 가능하게 되므로 구성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집필과 편찬심의 등이 종료된 이후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⑦ 편찬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한 위원이 누구인지, 전문성이 있는지, 편향된 경력 등으로 불신을 사는 인물이 아닌지 등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도 직결**되어 역사교과서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⑧ 이 사건 편찬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집필이 중단되는 등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이른바 ‘신상털기’ 등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에 우선할 정도로 침해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⑨ 피고가 주장하는 현대사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정**은, 해당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점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별지 1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별지 1] 정보목록

1.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명단

\* 참고 1 : 위 집필진 명단에는 집필자별 집필 분야 또는 단원 그리고 소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위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 참고 2 : 위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에는 소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2 ○○○○ 멘토링 프로그램 심사위원 인적사항, 평가점수,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20954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6. 8. 8. 피청구인에게 '①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심사위원 인적사항, ② 평가점수, ③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2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바, 심사위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심사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의 아이디어 및 제품 등은 차후 시제품 등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2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8. 피청구인에게 ‘①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심사위원 인적사항, ② 평가 접수, ③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24. 청구인에게 정보 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최하는 2016 ○○페스티벌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청구인이 판단하기에는 공모 작품보다는 우수한 시중 판매 제품이 무수히 많은바 심사를 공정하게 하였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들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

호에서 규정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에 관한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6 ○○페스티벌 ‘2016 ○○ ○○ 멘토링 프로그램’ 본선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사일장: 2016. 8. 4. ~ 2016. 8. 5.
- 심사장소: ○○ A홀 ‘2016 ○○ 부스 내’
- 심사방법
  - 심사위원: 대학생 투자동아리 7개, 전문가 평가 5인, 일반 시민
  - 평가유형: 시장성 검토, 아이디어 참신성, 기술 구현 완성도, 인기 메이커팀 등
  - 평가방법: 팀별 질의사항, 서면, 무대공개발표, 현장투표 등
- 심사기준: 아이디어의 독창성, 창작 결과물의 완결성, 디자인 및 대중성 등 종합평가
  - 공방형: 독창성(40점), 디자인(30점), 공익성 및 대중성(10점), 완결성(20점)
  - 스토리텔링형: 독창성(40점), 대중성(40점), 완결성(20점)

라. 청구인은 2016.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알 수 있었던 참가자 아이디어나, 기술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 공개하지 아니함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과정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와 같이 비밀 유지를 부담함

마.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예선, 본선, 결선의 심사위원 이름, 소속, 연락처 등
  -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예선, 본선, 결선의 평가점수
  -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팀 명칭, 팀원 이름, 연락처 등, 심사에 참가하기 위한 영상)
- ※ 해당 영상에 나오는 아이디어 및 제품 등은 차후 시제품으로 상용화될 여지가 있는 것들임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①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예선, 본선, 결선의 심사위원 이름, 소속, 연락처 등, ②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 예선, 본선, 결선의 심사점수, ③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팀 명칭, 팀원 이름, 연락처 등, 심사에 참가하기 위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심사위원의 이름, 소속, 연락처 등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다.

2)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평가점수**는 2016 ○○○○ 멘토링 프로그램의 심사에 관한 정보로 엄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심사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2016 ○○○○ 프로그램 평가점

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다.

3) 2016 ○○○○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팀 프레젠테이션 영상**에는 참가팀에 대한 인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2016 ○○○○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팀의 아이디어 및 그 결과물로서 해당 영상에 나오는 아이디어 및 제품 등은 차후 시제품 등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3 본인이 응시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실기시험 필답형 시험 답안지(문제은행 출제방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21751

####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16년도 제2회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하자 2016. 8. 26. 피청구인에게 위 시험 중 2016. 6. 26. 시행한 필답형 시험의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와 자격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시험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채점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하고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려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경우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이 하는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9. 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16년도 제2회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하자 2016. 8. 26. 피청구인에게 위 시험 중 **2016. 6. 26. 시행한 필답형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답안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시험’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답안지의 공개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공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청구인과 채점위원을 동시에 소환하여 채점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알 권리와 자격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답안지에는 수험자가 작성한 답안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와 평가 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답안지를 공개하게 되면 시험문제까지 공개된다. 시험 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공개를 거듭하다 보면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를 활용할 수 없어 매년 많은 수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며,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져 문제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되어 피청구인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포기하여야 할 우려가 있다.

나. 또한 답안지의 공개만으로는 수험자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지 않아 채점기준을 비롯한 세부

채점결과에 대한 채점위원의 설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연간 수백만 명이 응시하는 주관식 실기시험에서 채점결과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채점위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압박은 우수한 전문가들의 채점위원 참여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중국에는 주관식 실기시험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년도 제2회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 시험(시험시간 3시간, 60점 만점)을 2016. 6. 26. 시행하고 작업형 시험(시험시간 1시간 10분, 40점 만점)을 2016. 7. 3. 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채점결과 100점 만점에 58점을 득점하여 합격결정 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2016. 8. 5.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 9.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수험생이 문제가 인쇄된 답안지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점위원이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 나. 판단

청구인은 단순히 답안지의 열람을 요청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문제 공개 및 채점위원의 채점사항 설명을 초래한다고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와 자격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은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으로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평가자들이 응시자가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의 정도, 실무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어떠한 채점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피청구인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하여 이 사건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어 있지만, **평가업무 자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 등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로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려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되 한번 출제된 문제를 다시 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문항을 축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년 많은 수의 문항을 개발하더라도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져 문제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이 하는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4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9186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주·철거로 인한 갈등조정 절차에서 생성된 정보인데,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주·철거로 인한 갈등조정절차가 종결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구역의 나머지 상가세입자들과 조합 간에는 갈등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평정이 종료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갈등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정 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분쟁사안, 분쟁당사자, 갈등조정관에 따라 조정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정내용이 다른 분쟁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갈등조정과정 및 절차에 관한 문건이나 갈등조정과정에서 갈등조정활동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조정과정에 관한 정보나 구체적인 보상안이 유출된다면, 이미 성립된 다른 사건의 조정당사자가 조정절차 및 조정안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의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절차나 조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왜곡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당사자간의 갈등조정절차의 진행이나 당사자간의 양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며, 이 사건 조합과 같이 법적 보상 의무가 없는 당사자로서는 갈등조정절차의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마련된 갈등조정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점, 갈등조정관으로서도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조정활동 및 조정의견에 대한 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조정활동 및 의견표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갈등조정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3. 9.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2. 4.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17. 청구인에게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면서도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15. 2. 28. 위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갈등조정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위 회의는 강제철거에 관여한 실무책임자들 위주로 진행되는 등 관련 공무원 및 조합의 책임회피를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갈등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갈등조정관 등은 ‘갈등조정회의가 종결되어 갈등조정관 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지도 아니하였던 최종중재안을 청구인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하면서도 조정종결선언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종료한 갈등조정회의와 관련된 문건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사인간의 분쟁중재에 관한 내용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및 현행 법령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년도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상가의 세입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7. 4. 상가가 철거되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조합의 동의를 얻어 2014. 9. 1.부터 2014. 10. 22.까지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청구인과 조합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나. 2014년도에 청구인에 대한 조정은 종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구역 철거대상 상가세입자 등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등 동일한 정비구역의 다른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협의 및 갈등조정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 조정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갈등조정도 어려워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조정과 관련된 문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조정은 강제할 수 없는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인데 조정절차 중 진행된 내용이 후일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분쟁당사자가 더 이상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 공개된 조정안과 비교하여 서로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보상조정내역이나 조정회의의 내용이 공개되면 조정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서, 부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0.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4. 10. 23.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내용 :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 비공개 근거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구체적 사유
  - 현재 귀하와 ○○○○○구역 조합 간 갈등조정회의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당사자인 귀하께 갈등조정회의 관련 문건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회의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4. 12. 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관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2014. 1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음 -

- 청구내용 : 본인 관련 진행되어 온 갈등조정회의가 금주 내 갈등조정관 보고서 제출과 더불어 종료됨을 갈등조정관으로부터 통지받았습니다. 갈등조정관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상기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 비공개 내용 : 갈등조정관 보고서
- 비공개 근거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구체적 사유
  - 청구인과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간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그동안 갈등조정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종합의 중재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갈등조정회의가 종결되지 않은 채 의사결정과정 중인 상황에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갈등조정관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15. 2.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기 공개문건 포함)’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2015. 2.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를 부분공개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비공개 내용 :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 갈등조정관 보고서
- 비공개 근거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 구체적 사유
  - 청구인이 요청한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및 청구인 간 갈등조정을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갈등조정회의는 합의 및 중재안이 도출되지 않고 종료되어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공개 시 갈등당사자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갈등조정관 보고서'는 갈등조정관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 의견과 입장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거재생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부분 공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갈등조정회의 운영관련 모든 문건'과 '갈등조정관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리며,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회의 종료에 따른 보고서'는 다시 부분 공개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분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갈등조정관 파견 결과보고
  - ○○○○○구역 조합과 상가세입자 간 이주·철거관련 갈등·중재 조정을 위해 주거사업(구 재정비과)의 갈등조정관 지원요청에 따라 갈등전문가를 파견하여 활동한 결과를 보고함
- I. 갈등조정관 지원요청내용
  -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갈등조정관 지원요청(재정비과 - 7712, 2014. 8. 7.)
    - 2014. 8. 7.부터 갈등 해소 때까지 이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갈등조정관 지원요청
- II. 조정활동 개요
  - 파견갈등전문가 : ○○○(○○○○○)
  - 활동기간 : 2014. 8. 13. - 2014. 12. 30.(총 15회 활동)
  - 조정대상 : ○○○○○구역 조합, 상가세입자(○○○), ○○시 및 △△구 담당부서
  - 활동방법 : 면담, 갈등조정회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조정활동 전개

## ■ 활동경과

- 2014. 8. 8. 조정의뢰(○○○씨 시청 앞 1인 시위 및 단식농성 중인 상황)
- 2014. 8. 13. - 8. 31.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준비
  - ○○○씨, 조합, 시청 및 센터 관계자 등과 연쇄 면담
- 2014. 9. 1. - 10. 22. 갈등조정회의 개최(총 6회)
  - 철거관련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간 입장 확인 등
- 2014. 11. 1. - 12. 23. 각 관련 당사자 개별 면담 및 조정활동
  - ○○○씨와 조합 간 이전비 및 협의금 지급 내용 조정 등
- 2014. 12. 30. 갈등조정활동 종료, 최종보고서 제출

## III. 갈등전문가 활동 내용

### ■ 사전협의체 구성관련 문제

- 강제철거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지침의 성격이 강행적인지 권고적인지 여부에 대해
  - 당시 지침 마련 부서인 주거재생과 담당 팀장 면담을 통해 강행적 성격을 가진 지침이었음을 확인
  - 하지만 시 내부지침이 일반주민 등 행정기관 외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 차후, ○○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등 지침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
- 민원인이 사전협의체 참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 관련부서를 통해 참여대상임을 확인
- 이전비 보상 및 철거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민원인에 대한 철거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 ○○○○○구역 철거용역업체 관계자를 갈등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 철거용역업체와 ○○○씨 간 자진 이주기한 합의사항(최초 2014. 7. 1.에서 2014. 7. 4.로 변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합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지시킴
- 민원인의 이전비 보상에 대해
  - 법원 판결을 통해 민원인이 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 철거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 조합과 ○○○씨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갈등전문가가 최종 조정안 제시

## IV. 조정결과

최종 조정안에 대해 조합 수용, ○○○씨 거부로 갈등전문가가 조정불성립 종결

▶ 붙임 : 상가세입자 민원관련 갈등조정 최종보고서 1부(비공개)

마. 2015. 2. 28.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갈등조정회의가 종결된 시점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다.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2015. 3. 9.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음 -

- 2015. 2. 4. 접수한 정보공개결정(부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각사유 : 현재 당사자 - 조합 간의 갈등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 시 보상 및 갈등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에 해당함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주·철거로 인한 갈등조정절차에서 생성된 정보인데,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이주·철거로 인한 갈등조정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구역의 나머지 상가세입자들과 조합 간에는 갈등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갈등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간의 양보를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정 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분쟁사안, 분쟁당사자, 갈등조정관에 따라 조정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조정내용이 다른 분쟁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갈등조정과정 및 절차에 관한 문건이나 갈등조정과정에서 갈등조정활동 및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가 공개되어 조정과정에 관한 정보나 구체적인 보상안이 유출된다면, **이미 성립된 다른 사건의 조정당사자가 조정절차 및 조정안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의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향후 진행 중인 다른 조정절차에서도 조정절차나 조정안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왜곡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분쟁당사자간의 갈등조정절차의 진행이나 당사자간의 양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며**, 이 사건 조합과 같이 법적 보상 의무가 없는 당사자로서는 갈등조정절차의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마련된 갈등조정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점**, 갈등조정관으로서도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조정활동 및 조정의견에 대한 사항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조정활동 및 의견표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갈등조정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함으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5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활동기간, 각 검찰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 안건 등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 법무부 09-17315

**재결요지** [1]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마친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직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까지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검찰조직의 인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보안성을 요하는 인사의 특성과 배치되고, 외부에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발생이나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의견제시 등으로 인해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09. 6.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중 임기를 마친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표시)과 활동기간을 비공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검찰인사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2009. 5. 30.까지 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 표시)과 활동기간**, ② **각 검찰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③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심의 및 의결) 안건**, ④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19. 위 공개요구 정보 중 ②, ③ 정보는 공개하기로 하면서 ①, ④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 표시)과 활동기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이 아니라, 같은 호 단서조항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고, 한편,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검찰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더 확보될 것이며,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최근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 11. 3. 선고 2008구합31987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은 검찰인사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심의가 종결되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 표시)과 활동기간'이 공개될 경우 검찰인사를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로비의 창구 등으로 이용되거나 최소한 외부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고, 과거의 위원명단 역시 자신이 위원이었던 사실이 장래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인사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며, 특히 변호사인 외

부위원들의 경우 혹시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입은 검사들에 의하여 사건과 관련하여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므로, 위와 같은 현실적 고려 없이 위원명단을 공개하면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다.

나.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인사대상자, 검사임용 예정자들로부터 로비 등의 직접대상이 될 수 있고 인사에 불만을 품은 개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면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심의사항에는 개인의 신상자료 등 사생활과 직결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일부공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검찰인사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2009. 5. 30.까지 ‘각 검찰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심의 및 의결) 안건’ 및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9. 위 공개요구 정보 중 ‘각 검찰인사위원별 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개최 일시와 회의(심의 및 의결) 안건’은 공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검찰인사위원회는 1987. 10. 24. 처음 설치된 이후 2004. 1. 20. 「검찰청법」 개정을 통하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이 되었고,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3인과 내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련법령의 검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평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6호)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은 1.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외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4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제5조,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8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9조)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표시)과 활동기간’을 비공개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위원회 위원명단과 활동기간이 공개됨으로써 검찰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衡量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 12946판결).

(2) 위원회는 감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위원회가 외부 여론이나 로비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인사가 임박한 인사대상자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시도가 있거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론에 노출됨으로 인해 위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후에는 인사와 관련된 시시비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도 있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개연성이 높고, 결국 위원회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제고해야 할 이익이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임기를 마친 위원들의 명단과 활동기간**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영향을 받는다면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심의에 충실히 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마친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직 위원의 명단과 활동기간까지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을 비공개한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심의 및 의결사항’은 이미 심의가 종결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지 아니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검찰조직의 인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보안성을 요하는 인사의 특성과 배치**되고, 외부에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발생이나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의견제시 등으로 인해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인사관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임기를 마친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명단(위원장 별도표시)과 활동기간을 비공개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6 본인이 응시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전과목 문제지 (출제위원 출제방식)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5. 6. 29.부터 그 다음 날까지 시행된 제4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한 후, 2005. 7. 13. 피고를 상대로 위 시험의 전과목 문제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7.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2] 피고의 주장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제시된 조건에 따라 관련 공식과 틀을 이용하여 정답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도록 출제되므로 그 시험 문제는 각 대학의 모의고사 또는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과목의 적절한 평가가 어려워진다.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자들이 출제오류, 유사문제 출제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출제위원으로의 선정을 기피하거나 출제위원으로 관여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기출문제의 암기에 매달려 폭넓은 공부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 [3] 쟁점

공인회계사 2차시험 기출문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가 제한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법원의 판단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시험 문제의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출제오류나 유사문제 출제로 인한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출제위원 선정에 대한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은 공인회계사시험에만 존재하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시험이 이미 40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어서 새로운 문제의 출제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용은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2차시험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 문** 1. 피고가 2005.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4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지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부터 그 다음 날까지 시행된 제4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험의 전과목 문제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7.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문제지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회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가 ○○대학교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출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를 모두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2) 피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은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제시된 조건에 따라 관련 공식과 틀을 이용하여 정답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도록 출제되므로 그 시험 문제는 각 대학의 모의고사 또는 기존의 기출 문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험 문제를 공개할 경우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가 불가하게 되어 해당과목의 적절한 평가가 어려워진다.

(나) 또한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자들이 출제오류, 유사문제 출제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출제위원으로의 선정을 기피하거나 출제위원으로 관여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기출문제의 암기에 매달려 폭넓은 공부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 나.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 (업무의 위임. 위탁)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차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제2조 제1항 관련)

과목	과목별 배점	비고
재무회계	150점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
원가회계	100점	
회계감사	100점	
세법	100점	
재무관리	100점	

## 제38조 (업무의 위탁)

⑥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위원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상당한 이유’를 살펴본다.

##### (1) 피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시험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문제가 공개됨에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달리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 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른 한편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배제될 경우 기출문제와 다르거나 변형된 형태로의 새로운 문제를 창안하여 출제할 가능성이 없는 등 **또 다른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여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 문제의 출제에 있어 다른 시험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하여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비공개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피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유류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

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그러한 출제오류 등이 시정 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출제오류나 유사문제 출제로 인한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출제위원 선정에 대한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은 공인회계사시험에만 존재하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 (3) 피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인회계사시험이 이미 40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는 행식 출제가 아니어서 새로운 문제의 출제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용은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유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시험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0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입법취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판단기준**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됨

대법원 2011두2361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공개청구 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 하여야 하며, 개개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비공개대상 개인식별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분리가능성 및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공익을 위한 개인식별자료의 공개필요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4두9180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

대법원 2008다42430

다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두8050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같은 호 단서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 중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국무총리심판위원회 2007-14671

# ① 행정심판위원회 특정 사건 관련 심리시간 및 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 참석 및 심리수당

정보공개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4422

##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비로, 피청구인은 위 참석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로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참석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7. 1.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1. 피청구인에게 ‘◎◎고검행심위원회 2012 제\*\*\*호 관련 심리 당일 심리시간 및 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 참석 및 심리수당’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6. 7. 8. 위 정보 중 심리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을 공개하면서 ‘심리시간’은 자료가 부존재하고, 참석 및 심리수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참석 및 심리수당’(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12. 10.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 11.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 17차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과 직책, 1인당 지불한 비용과 총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12. 14.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도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1. 피청구인에게 ‘◎◎고검행심위원회 2012 제\*\*\*호 관련 심리 당일 심리시간 및 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 참석 및 심리수당’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8. 청구인에게 심리건수, 참석위원들의 이름과 당시의 직업을 공개하면서 ‘심리시간’은 자료가 부존재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7. 1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비로, 피청구인은 위 참석비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로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참석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② 5급 및 5급 상당 간부 이상 공무원 전원에 대한 개인별 출장 여비 수령내역

정보비공개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청구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5-349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3.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 22. 피청구인에게 “2013년 1월 부터 2014년 12월 까지(24개월) 5급 및 5급 상당(계약직 가급) 간부 이상 전원에 대한 개인별 출장 여비 수령내역[직명(이름), 건별 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각/귀청시각, 출장목적지, 출장목적, 관용차량 사용 여부, 복명서(출장보고서)제출여부, 월별 출장 총시간/월별 출장여비 수령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출장날짜, 출장시간 및 출발시간/귀청시각, 개인별 월별 출장 총시간/월별 출장여비 수령액(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결정하고 해당부분을 제외 후 부분공개함을, 복명서(출장보고서)는 피청구인이 생산하지 않는 정보임에 따라 부존재함을 통지를 하였다.

다. 위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후 2015. 3. 9. 청구인에게 위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아니며, 이미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구 감사부서장의 월별 출장비 수령액과 결재일시는 공적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와는 관련성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상자를 5급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고 해서 판단을 달리 볼 이유는 없으며, 출장여비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부분공개하여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청 ○○실에서 2011. 4. 21. ~ 2015. 4. 20.까지 4년동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단법인 ○○○○연대 운영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에도 운영위원 직위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요구와 행정감시 목적을 운운하며 수수료 감면까지 받으려고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불법으로 취득한 직위를 이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요구한 것은 청구인으로서의 권리 능력이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자 중대한 흠결사항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중 출장일자, 출장시간, 출발시간, 귀청시간, 출장여비내역까지 요구한 것은 개인별 소득정보를 유추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와 함께 각종 단속 및 점검 등의 행정업무 수행시 관련 정보의 누출 등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소속,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및 관용차량사용여부와 월별 출장 총시간, 월별 출장여비 총 수령액 정보로 부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정보 열람 및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보의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년 동안에 걸쳐 무분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공개하는 경우 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5급 및 5급 상당 간부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2년간 출장일자, 출발시간과 귀청시간, 개인출장비 수령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이 공익적 감시활동이라는 명분하에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재결례를 운운하며 정보공개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건의 경우 특정 부서장의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월별출장비 수령액, 결재일시가 포함된 문서정보결재 내역을 이미 공개 후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기간을 확대하여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판단한 특정 개인에 대한 것으로 본 건과의 연관성은 부족하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항, 제9조, 제19조 제1항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22. 피청구인에게 “2013년 1월 부터 2014년 12월 까지(24개월) 5급 및 5급 상당(계약직 가급) 간부 이상 전원에 대한 개인별 출장여비 수령내역[직명(이름), 건별 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각/귀청시각, 출장목적지, 출장목적, 관용차량 사용 여부, 복명서(출장보고서)제출여부, 월별 출장 총시간/월별 출장여비 수령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2. 13. “직명(이름), 출장목적지, 출장목적, 관용차량 사용여부, 5급 및 5급 상당 간부 이상 전원의 월별 출장 총시간/월별출장여비 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결정하고, “건별 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각/귀청시각, 개인별 출장비 수령내역”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복명서(출장보고서)는 관련 규정 및 조례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생산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부존재함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2015. 2. 19.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고 2015. 3. 9. 청구인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겸직이 금지된 사단법인의 운영위원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

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 정보'와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정보인 **출장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각, 귀청시각**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위에서 살펴본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고,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공개정보를 기존 부분공개된 정보와 비교하여 공무원 개인별 출장비 수령내역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정보일 뿐만 아니라 개인별 출장비 수령내역이 공무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으로서, 알려지게 되는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sup>1)</sup>.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같은 항 제5호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당초의 처분사유로 삼은 같은 항 제6호에 추가하여 같은 항 제5호의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만을 처분사유로 들었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과정에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미 부분공개 된 정보를 열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3 기초생활수급 관련 미성년 자녀가 작성한 민원 제기 서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73

**판시사항**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이하 위 2인을 통틀어 ‘원고의 자녀들’이라 한다)는 2015. 8. 6. 피고에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위 민원 제기 서류를 ‘이 사건 서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소외 1, 소외 2의 친권자인바, 소외 1, 소외 2등 이 신청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 민원서류 복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상기 문서는 개인의 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들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번호 있는 것은 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서류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자녀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서류는 행정관청인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② 원고의 자녀들은 1997년생, 1998년생으로서 그 연령과 직접 자필로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하였다 고 밝히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서류의 공개를 부동의하고 있다.

③ 기초생활수급비 분할 지급 여부 판단은 원고의 자녀들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수령하고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다음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분할 지급으로 원고가 지급받는 기초수급비의 총액이 사실상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서류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류라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2007년 가을경 서울 성○구 (주소 생략) ‘○○○○○’(소외 3, 소외 4 운영)건물에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중국 출장 등으로 위 건물에서 숙식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며, 2014년 12월경에는 혼자 위 건물에서 나와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원고의 자녀들은 소외 3, 소외 4와 약 10년 이상 함께 거주해 온 반면, 원고와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사정과 원고의 자녀들의 양육 과정 및 주거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친권자라 하여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4 특정 공무원의 이전 근무지, 직명 및 보직이력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7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시장이 2013.5.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 ‘2013.5.8’은 오기로 보인다)과 피고 ○○○○시 ◎◎구청장이 2013.9.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 ‘2013.9.9’은 오기로 보인다)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4.25. 피고 ○○○○시장에게 ○○○○시 소속 ○○○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지, 직명 및 보직이력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시장은 2013.5.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 1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9.6. 피고 ○○○○시 ◎◎구청장에게 ○○○○시 ◎◎구 소속 △△△의 생년월일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지, 직위 및 보직 이력에 대한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 ○○○○시 ◎◎구청장은 2013.9.10. 원고에게 △△△의 현 근무지 및 직위 부분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정보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정보'라고 한다)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2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3.5.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1.19 기각되었고, 2013.9.12.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11.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2,3,4,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 ◎◎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소송에서 당시 ○○○○시 ◎◎구 토목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는 위 법원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시 ◎◎구 토목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은 원고 소유의 대지가 한국전력공사 보광변전소의 피해침해 특수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도록 하였다. 원고가 ○○○와 △△△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이 사건 제1, 2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고, 이 사건 제1, 2 정보가 개인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 정보는 ○○○○시 ◎◎구 토목과에 근무하였던 공무원 ○○○와 △△△의 **이전 근무지, 직위 및 보직 이력**에 대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제1, 2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관련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공사 직원 포함)의 직위와 명단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7-14671

**주문** 피청구인이 2007. 7.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25. 피청구인에게 “○○에서 2006. 12. 30.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면서 같은 해 2월과 8월에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공사 직원 포함)의 직위와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7. 3. 이 사건 정보 중 ① 동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의 직위와 명단은 공개하고, ② ○○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7. 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10.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7. 3. 실시한 제○회 제○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5. 8. 31.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불합격한 이유는 청구인이 시험을 잘 못봐서이기도 하나 피청구인이 엉터리 대책회의를 하여 정답을 잘못 적용하여 채점을 하였기 때문인 바, 동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을 알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공사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공사 직원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으로서 공개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 가. 본안 전 답변

청구인은 제○회 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동 시험에서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랙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동 시험 당시 시행되고 있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8호)에 따라 위 문제의 답을 1.7m와 2.5m로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이후 피청구인은 2006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동 기준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를 1.7m로 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목적은 단지 영터리로 법개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알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2006년도 국가화재 안전기준 개정관련 기술검토회의를 2회(2월과 8월)에 걸쳐 실시하였는 바, 동 회의에는 대학교수, 기술사, 소방관련단체, 시공사, 시 도소방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특히 ○○공사직원과 ○○은 기관이나 단체의 자격(공무원)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직원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기본법 제46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진술서 등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3. 실시한 “제○회 ○○○○ 제○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5. 8. 31.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로서, 2007.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7. 3. 이 사건 정보 중 ① 동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의 직위와 명단은 공개하고, ② ○○공사 직원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7. 3.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10.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단지 법개정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고,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같은 호 단서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 중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공사는 ①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기술의 조사 연구, ②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③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⑤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⑥ 그 밖에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 ○○공사 직원이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2006년도 국가 화재안전기준 개정관련 기술검토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공사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단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㉔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6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관련 현지조사 측량자·현지조사위원·감독자 성명과 직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기각결정 무효확인청구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7-19790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7.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6. 7. 기각되자, 2007. 6. 25. 피청구인에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관련 현지조사측량자·현지조사위원·감독자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6. 26. **현지조사측량자·현지조사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상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감독자의 경우는 별도로 지정된 감독자가 없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6. 27.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10.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 주요인 중 하나가 현지조사측량자 및 현지조사위원들에게 잘못이 있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그들의 성명과 직위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그들의 신분을 비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현지조사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지적법 제41조의9, 제44조제3항  
지적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3항, 제52조제3항, 제53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6. 26.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현지조사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감독자의 경우는 별도로 지정된 감독자가 없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6.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7. 10.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이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같은 호 단서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 중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적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제53조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대한지적공사에 그 소속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적법」 제41조의9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업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이 사건 현지조사측량자는 대한지적공사 소속의 지적기술자로서,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현지조사에 참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대한지적공사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현지조사측량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다. 다음으로,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

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지적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중앙지적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인 현지조사위원은 「지적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전문가인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정보 중 중앙지적위원회 현지조사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 하지 않은것은 위법하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7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 관련 일체의 서류

정보공개청구재결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시 고시 제2003-341호로 고시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건물소유자로서 2005. 5. 11. 피고에게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보상계획서,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협의경위서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사본 및 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5. 5. 17. 원고에게 “본인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이미 공표된 자료와 원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그 외의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 [2]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손실보상결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과 재산관련사항은 ○○○○시 고시 제2004-429호로 이미 고시된 내용임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3]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개가 불가능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쟁점

감정평가업자에게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내세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작성의 문서 등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5] 법원의 판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 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내세워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작성의 문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점에 의미가 있다.

- 주 문** 1. 피고가 2005.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360-0 대 0,000㎡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그런데 ○○○○시장은 2003. 11. 10. ○○○○시 고시 제2003-341호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 ○○구 ○○동360 일대 912,00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다음, 2004. 10. 8. 공고 제50호로 일정한 기

간 동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고, 그 보상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도시개발 구역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그 후 ○○○○시장은 측량결과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2004. 12. 27. ○○○○시 고시 제2004-429호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A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가 나오자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보상액으로 산정한 다음, 위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물건 등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 2005. 2. 17.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보상협의를 하여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을 신청하라”고 1차 안내를 하였다가 2005. 4. 20. 추가안내를 거쳐 2005. 5. 16. 최종적으로 같은 달 27.까지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면서 만일 위 기간 동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5. 5. 11. 피고에게 “○○○○시 고시 제2003-341호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서, 별지 목록 2번 기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보상계획서,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별지 목록 3번 기재 협의경위서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사본 및 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05. 5. 17. 원고에게 “본인의 자료에 대한 열람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5. 8. 17.과 같은 달 19.경 B감정평가법인, A감정평가 법인, C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위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 그 후 ○○○○시장은 2005.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미 공표된 자료와 원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그 외의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3,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 3,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를 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 중 주민등록번호와 손실보상 결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과 재산관련사항은 ○○○○시 고시 제2004-429호로 이미 고시된 내용임에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목록 1, 5번 기재 각 정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목록 2, 3, 4, 6번 기재 정보 중 원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개가 불가능하거나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별지 목록 1, 5번 기재의 문서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사유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 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이상, 피고 작성의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가 별도로 보유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일정한 서식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마친 다음, 일정한 서식에 따라 대상물건의 평가내역(감정평가서로 보임)을 별첨한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사인 심사자 1인 이상의 심사와 그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3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보상평가서도 피고가 별도로 보유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위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로 위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2)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한 사유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정보 중에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금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이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문서 전체가 아닌 문서의 일부분이 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혼합문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6항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일 뿐,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피고로서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감정평가서 등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보 중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정보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별지 목록 5번 기재 정보인 '보상평가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그밖에 혼합문서들로 보이는 나머지 정보들은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한 다음,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사생**

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비공개하거나 청취한 의견을 참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문서와 없는 문서, 나아가 혼합문서라도 사생활의 비밀 내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전체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3) 소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목록]

1.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3. 협의경위서
4. 보상평가의뢰서 및 첨부서류
5. 보상평가서
6. 보상협의요청서(손실보상결정통지서)

## 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서류 및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03두8302

- 판시사항**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의 범위 및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4]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5] 법인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 유

### 1. 당사자적격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같은 취지가 포함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적격 및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2.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에 대하여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법시행령 제14조, 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판시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정보에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나아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에게 열람의 방법에 의한 공개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공무원의 정보에 대하여

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피고들이 주최한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행사참석자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행사참석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피고들이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금품수령자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품수령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1두724 판결,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금품수령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금품수령자정보 중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4. 법인·단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원심은 법인·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비공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법인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정보 중에 위와 같은 정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0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대법원 2008두13101

**판단기준** 제6호는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제7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비공개정보로 하여 비공개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7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

대법원 2009두19021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24651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12두12303



#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누7550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고) 복선전철 민간제안사업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sup>1)</sup>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고) 복선전철 민간제안사업,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주식회사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A주식회사가 부담하며,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의 참가로 인한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1. 청구취지

## 항소취지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1) 목록

아래 3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최초, 최종, 각 실시협약서의 별표 내지 부록 중 '재무모델' 부분은 제외) 및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최초, 최종)(집계표 포함)

1.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고) 복선전철 민간제안사업
3.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조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고) 복선전철 민간제안 사업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참가인 B 및 C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참가인 B 및 C가 이 사건 제1, 2 복선전철 사업의 설계내역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 표준품셈 및 단가정부 표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한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뿐, 피고와 참가인들이 협상을 거쳐 확정된 '실시협약상의 공사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복선전철 사업의 공사비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소의 이익이 있고 없음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2089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2016. 3. 21.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며 ‘정보부존재’라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비로소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방어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는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참조) 행정소송의 본안판단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그 충위를 달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다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제2 복선전철 사업에 관하여, 참가인 C는 사업제안서에 총 공사비 1조 1,120억 8,000만 원의 공사비내역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와 참가인 C는 협의를 거쳐 총 공사비를 8,531억 원으로 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참가인 C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위 1조 1,120억 8,000만 원의 공사비내역서와 각 공종별 총액내역만을 8,531억 원에 맞추어 정리한 공사비현황표(참가인 C의 2017. 6. 12.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1)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제2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1조 1,120억 8,000만 원의 공사비내역서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참가인 C와 사이의 실시협약상의 총 공사비 8,531억 원의 공사비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제1 복선전철 사업에 관하여, 참가인 B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서 1,293,535,754,988 원의 공사비내역서와 각 공종별 총액내역만을 변경실시협약상의 공사비 9,982억 4,400만 원(을다 제4호증)에 맞추어 정리한 공사비현황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1,293,535,754,988원의 공사비내역서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최초실시협약상의 총 공사비 9,908억 2,700만 원이나 변경실시협약상의 총 공사비 9,982억 4,400만 원의 공사비내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sup>2)</sup>이 인정된다(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공사비 산출근거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와 참가인 C 및 B가 협의를 거쳐 총 공사비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새로운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피고도 위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어

2)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따르면, 제1심법원의 비공개열람·심사결과와 달리,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제1 복선전철 사업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도 원고가 구하는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 1,293,535,754,988원에 대한 것이다.

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의 행정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일 뿐, 원고의 주장만으로 위 인정 사실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상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상의 총 공사비 8,531억 원의 공사비내역 및 이 사건 제1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상의 총 공사비 9,908억 2,700만 원(최초) 또는 9,982억 4,400만원(변경)의 공사비내역에 대한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들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가인 C 및 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별지에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 및 이 사건 제1, 2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최초, 최종) 및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최초, 최종)(집계표 포함)’라고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소 중 이 사건 제2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최종 공사비내역서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제1, 2 복선전철 사업 및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내역서는 ‘사업시행자(참가인들)가 피고에게 제안한 공사비내역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임을 분명히 하면서,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은, 참가인 C가 제안한 공사비내역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17. 2. 7.자 준비서면). 그렇다면 제1심법원이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공사비가 아닌, 참가인 C가 제안한 1조 1,120억 8,000만 원에 대한 공사비내역서를 이 사건 제2 복선전철 사업의 최초 공사비내역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1조 1,120억 8,000만 원의 공사비내역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라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참가인 B의 1,293,535,754,988원의 공사비내역서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복선전철 사업에 관하여는, 아래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의 공사비내역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이 준공된 후 피고가 참가인 B 및 C로부터 준공 공사비내역서를 제출 받으면 그때 다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2행 ‘이 사건 제2정보는’부터 9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2정보 중 이 사건 고속도로 사업의 공사비내역은 각 공구별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공사 등의 공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뒤, 개별 공종에 대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호가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합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작성되고 있고, 위 공사비내역 총액은 실시협약상의 총 공사비 7,472억 9,500만 원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서 11쪽 9행부터 12쪽 1행까지「라」항 부분을 삭제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 복선전철 사업의 공사비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②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 주 문**
1. 피고가 2016. 11. 9. A에 대하여 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16. 9. 23. 화장품 수출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릴 목적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이하 ‘이 사건 정보’)와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나. 피고는 2016. 10. 20.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A는 2016. 10. 21.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정보공개심의회는 2016. 11. 7. 「이 사건 정보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은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되어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심의회’).

마. 피고는 2016. 11. 9.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3. 절차적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협회(이하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회사들’)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 협회에는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 전날인 2016. 11. 6 에야 비로소 원고 협회 직원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 나. 판단

####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절차를 거쳤더라도 제3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채 한 정보공개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이 사건 정보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매년 피고에게 보고하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으로서, 원고 회사들이 제조한 화장품의 원료와 관련한 정보이다.

② 원고 협회는 원고 회사들을 포함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로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92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출 받아 피고에게 보고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 회사들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다.

④ 피고는 2016. 11. 6. 오후 4시경 처음으로 원고 협회 직원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⑤ 원고 협회는 2016.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원고 협회가 피고에게 보고한, 원고 회사들이 제조한 화장품의 원료와 관련한 정보이므로, 원고들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 회사들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2016. 9.23.로부터 40일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하루 전날인 2016. 11.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 협회 직원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원고 협회가 위와 같은 피고의통지에 대해 피고에게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하루 전날 보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4. 실체적 위법 여부

##### 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쟁점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되어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하 ‘전 성분 정보’)과 같은 부분만을 공개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18만여 품목의 화장품의 원료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전산정보 처리가 가능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또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룬다.

3)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화장품 품목별로 이미 공개된 ‘전 성분 정보’라도 대다수 품목에 관한 것으로서 함께 공개 청구된 경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이 사건 정보 가운데 ‘전 성분 정보’와 같은 부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본다.

## 2)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 3) 구체적 판단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가) ①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의 품목별 원료를 내용으로 하는 엑셀 파일 형태의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인 점, ② 특히 이 사건공개 대상 정보는 과거의 정보까지 망라하여 횡단면 정보와 종단면 정보가 결합한 이른바 패널 데이터(panel data)로 활용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단한 분류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비교하여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배합 경향을 알 수 있는 등 손쉽게 다른 화장품 또는 다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의 비교를 통해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별, 브랜드별, 제품별, 원료별로 다양한 정보를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사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원료의 대체관계를 알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수많은 '전 성분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하여 모아 놓은 것으로서 이른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에는 원고 회사들을 포함한 수천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이 제조한 약 18만여 화장품의 원료 정보가 들어 있다. 개인이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된 ‘전 성분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회사들이 각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나 그 원료를 배합하는 경향, 특정 원료의 대체 관계 등은 원고 회사들의 생산기술의 하나로서 원고 회사들이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영업상 비밀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

라) 원고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은 특수법인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나 정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원고 회사들의 생산기술에 밀접한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속하므로, 헌법상 원고 회사들의 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내외 경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이 원고 회사들의 생산기술을 엿볼 수 있게 되므로, 원고 회사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노력과 자금이 무위로 돌아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국내 외 경쟁 화장품 제조판매 업자들은 원고 회사들의 위와 같은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유사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 정보를 구성하는 개별 화장품의 ‘전 성분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단지 ‘전 성분 정보’가 통합되어 공개되지 않는 데 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할 이익보다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들의 위와 같은 영업상 비밀을 보호 할 필요가 더 크다.

####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비공개 사유에 관한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 발송한 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 등

정보공개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00707

-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관내 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 발송한 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 등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면서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지우고 이 사건 정보를 사본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살피건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차량번호, 업체명의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기관)계좌번호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운수종사자 성명은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주 문**
1.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 중 차량번호와 업체명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관내 법인택시사업조합(회사별 포함),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 발송한 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 등(기간 : 2015. 1. 1.부터 12. 14.까지)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면서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지우고 이 사건 정보를 사본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결정 통지를 했으면서도 정작 내용은 부분공개를 하였고, 그 비공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잘못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 중 ‘업체명’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그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거나 현재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 공개에 따른 회사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계좌번호’는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법인의 이름과 결합할 경우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운수종사자 성명’은 회사명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운송사업자의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라. ‘차량번호’는 개인의 성명처럼 해당 차량이 없더라도 번호는 존재하고 타 운송사업자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업체만 소유하고 있는 고유번호로서 회사명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면서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지우고 이 사건 정보를 사본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문서 제목	비공개 부분(지운 부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 추가서류 제출 안내	운수종사자 성명
택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소명 안내	차량번호
부제일 신용카드 결제내역 소명 안내	차량번호
법인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수수료(또는 통신비) 지출 통보	조합 계좌번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납부계좌 변경 안내	각 시도별 관리기관 계좌번호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업체명
검사(점검)일정 통보	업체명
디지털운행기록 등 서류제출 명령	업체명
부가세 경감세액 서면 조사	업체명

다. 위 유가보조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일부 업체는 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2015. 12. 14.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5. 12. 21. **이 사건 정보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2015.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를 사본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면서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지우고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피청구인에게 이 부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에 대해 살펴보면, (기관)계좌번호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운수종사자 성명은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기관)계좌

번호, 운수종사자 성명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차량번호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차량번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택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및 부제일 신용카드 결제 관련 차량번호는 일견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차량번호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이나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 외 차량번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량번호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차량번호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끝으로, 업체명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각종 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관련 각종 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업체가 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업체명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각종 조사, 점검, 서류제출 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감사·감독·검사 및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각종 조사, 점검, 서류제출 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명을 공개했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청구인도 업체명의 공개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 경우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각종 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업체명은 일견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업체명을 공개함으로써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허위청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 외 업체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체명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업체명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기관)계좌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차량번호와 업체명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4 □ □ 대학교와 인천시 간 □ □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

정보공개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4606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 □ 대학교와 인천시 간 □ □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로서 동 협약서에는 사업 추진계획서의 제출, 사업추진구조,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공급, 신규 토지매매계약의 주요 조건(매매가격, 공급 및 대금지급 시기 등),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제공, 완충녹지 조성, 교육연구시설 건립, 협약의 해제·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 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도 및 조건, \*\*-\*공구 토지이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토지매매가격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피청구인이 □ □ 대에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인바, 피청구인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지구를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기업과 대학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리한 입지를 내세우고 값싼 부지 제공,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며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 □ 대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협약서의 내용은 투자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 송도지구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등과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거나 향후에 협약을 추진할 기관과의 협상에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과 사립학교법인인 □ □ 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사업협약서를 공개하라.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와 인천시 간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3. 6.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3. 8. 6. 청구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대와 체결한 사업협약서는 향후 □□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2014년 제2캠퍼스 개교를 추진해오던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민주적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교육기관인 대학에 적용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비공개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대상 부지의 매입가격, 협상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학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대학 운영상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위 사업협약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제공조건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외부에서 이를 투기목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피청구인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는 지금까지 항상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협약서는 피청구인이 행정주체로서가 아니라 □□대와 대등한 사경제적 주체로서 체결한 계약으로서, 동 사업협약서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대상인지 의문이고, 동 협약서 제28조 등에는 양 당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대의 의견청취결과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참고사항에 해당한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4.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와 인천시가 체결한 □□대 송도캠퍼스 부지 이전 사업협약서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제3자인 □□대에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3. 6. 5. □□대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대상 부지의 매입 가격, 협상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학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운영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2013. 6.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3. 8. 6. 청구인은 이를 수궁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 추진계획서의 제출, 사업추진구조 및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공급, 신규 토지매매계약의 주요 조건(구체적 위치·면적, 매매가격, 각각의 공급 및 대금지급 시기 등),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제공, 완충녹지 조성, 교육연구시설 건립, 협약의 해제·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 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도 및 조건, \*\*-\*공구 토지이용계획 등

바. 그 동안 연세대, 인천대, 인천가톨릭대, 한국 뉴욕주립대 등이 피청구인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송도지구에 입주한 바 있고, 앞으로 ○○○대, ○○대, ○○○○○대, ○○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등을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와 인천시 간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로서 동 협약서에는 사업 추진계획서의 제출, 사업추진구조,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공급, 신규 토지매매계약의 주요 조건(매매가격, 공급 및 대금지급 시기 등),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제공, 완충녹지 조성, 교육연구시설 건립, 협약의 해제·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 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도 및 조건, \*\*-\*공구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토지매매가격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피청구인이 □□대에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인바, 피청구인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지구를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기업과 대학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리한 입지를 내세우고 값싼 부지 제공,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며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대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협약서의 내용은 투자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 송도지구**에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등과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거나 향후에 협약을 추진할 기관과의 협상에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과 사립학교법인인 □□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 관련 문서 등(납품업체 견적서 포함)

정보공개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107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

납품업체가 작성·제출한 견적서에는 납품업체의 납품수량, 단가,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해당 납품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영업상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사건 정보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과 그 예산안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고 이를 다시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의 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3.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13.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2013. 1. 18. 자동차운영과-169, 171로 시행된 공문본문 및 그 불임자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서식 6호에 따른 기록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 및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명확한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정당한 정보공개처리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주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3.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169호(2013. 1. 1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관리 및 미반환기불금 구상업무 위탁운영기관인 손해보험협회의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기 위한 내부결재 공문서임
  - 붙임자료는 2013년도 손해보험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1부, 계산검토서 1부이고, 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안, 기대효과, 예산 세부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붙임자료 중 채권정리위원회 정례 개최 등을 위한 예산 세부내역의 근거자료(복합기 견적서, 스캐너 견적서, 서류파쇄비용 견적서)는 납품업체(주)○○○, (주)○○○○○의 납품수량, 단가,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171호(2013. 1. 18.)
  - 손해보험협회에서 신청한 '2013년도 보장사업 및 분담금 관리 업무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승인함을 통보하는 공문서임
  - 붙임자료는 2013년도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기불금 사업계획 승인 1부이고, 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안, 기대효과, 예산 세부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붙임자료 중 채권정리위원회 정례 개최 등을 위한 예산 세부내역의 근거자료(복합기 견적서, 스캐너 견적서, 서류파쇄비용 견적서)는 납품업체(주)○○○, (주)○○○○○의 납품수량, 단가,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위 공무원들의 문서관리카드

■ 문서관리카드

○ 문서정보

[제목]

[과제카드명]

[관련정보]	
[문서요지]	
[본문]	
[붙임]	
○보고경로	
[구분] [직위/성명] [의견/지시] [서명] [처리결과] [이력]	
○시행정보	
[발신기관명] [발신명의]	
[생산등록번호]	
[공개여부]	
[수신]	
[(경유)]	
○관리정보	
[열람범위] [열람제한]	
[온-나라 지식나라]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가능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

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4)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분담금관리자는 매년 12월 10일까지 차기년도 보장사업 및 분담금관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차기회계년도 개시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판단

##### 1)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작성·제출한 견적서**에는 납품업체의 납품수량, 단가,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해당 납품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영업상 자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2)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출한 2013년도 사업계획과 그 예산안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고 이를 다시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의 예산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납품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6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와 설문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2713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요지**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 자료는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각 개체별로 정리한 데이터 자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의 정보에서 ‘raw data’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 중 raw data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인 자로서 순수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2012. 12. 1.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와 ② 설문지(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20. 이 사건 정보들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영업(업무) 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결과 왜곡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문내용에 대해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항 자체의 비밀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들은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자료로 통상 다른 기관에서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설문조사 자료들은 공개하고 있고, 통계자료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학문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 왜곡은 지나친 걱정이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면 학술적 사용과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그 자체가 피청구인만의 고유한 노하우 아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성과물이고, ②의 정보는 미국의 NSF의 설문지에 기초하여 오랜 기간 필요에 따라 설문 내용이 수정·변경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인지도 조사나 청소년대상 설문항목 외에도 면접원의 질문요령과 시외적절한 과학기술에 관한 이슈를 선정하거나 과학기술분야를 세분화하여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예시 등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들은 피청구인만의 조사업무에 관한 고유한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공개청구의 목적이 학술연구에 있고 연구주제는 ‘과학기술 이해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또는 ‘과학기술 이해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제의 학술적 연구를 위해서라면 이미 공개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게 될 경우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여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인 자로서 순수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2012. 12.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20.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12.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8.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 10. 다음의 내용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자료의 유출로 인한 추후 조사의 통제력 상실 및 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과학기술국민이해도조사는 재단만이 수행하는 공공조사로 원자료를 이용한 제3자의 왜곡된 조사 결과 야기가 우려됨
- 설문지의 한국과학창의재단 추가 개발 문항 등은 영업(업무) 비밀에 해당함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 다 음 -

###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개요

- 피청구인은 2000년부터 격년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피청구인의 홈페이지('한국과학창의재단 홈> 알림> 연구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사 결과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 결과 요약, 조사 결과 분석 내용 등으로 구성됨

- 동 조사는 과학문화 및 창의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로서, 피청구인은 본 조사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및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 및 범위
  - ①의 정보
    - ①의 정보는 'raw data'와 'SPSS파일'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를 요약·분석한 문항별 세부 분석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①의 정보 중 'raw data'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각 개체별로 정리한 데이터 자료임
    - ①의 정보 중 'SPSS파일'은 raw data를 특정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자료로서 동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면 분석된 결과치가 도출됨
  - ②의 정보
    - ②의 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를 위해 작성한 설문지를 말하는데, 위 설문지에는 면접원의 질문요령, 질문문항, 문항과 관련한 예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를 수정·변경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에 활용하고 있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판결 참조).

## 나. 판단

### 1)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그 자체가 피청구인만의 고유한 노하우 아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성과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raw data’와 ‘SPSS파일’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raw data’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 ‘raw data’가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각 개체별로 정리한 데이터 자료인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에 피청구인만의 고유한 노하우 아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문항별 세부 분석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raw data’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의 정보에서 ‘raw data’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SPSS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SPSS파일’은 raw data를 특정 형식에 맞추어 정리한 자료로서 **동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면 분석된 결과치가 도출되므로 위 SPSS파일은 법인 등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①의 정보 중 ‘SPSS파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①의 정보에서 ‘SPSS파일’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를 위해 작**

성한 설문지를 말하고, 위 설문지에는 면접원의 질문요령, 질문문항, 문항과 관련한 예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를 수정·변경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점, ②의 정보에 포함된 면접원의 질문요령, 문항과 관련한 예시는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조사업무에 대한 고유의 노하우가 반영된 자료로서 동 자료가 공개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의 경쟁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 피청구인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받거나 영업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②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0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의 원자료(raw data, SPSS파일) 중 raw dat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7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일체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2012-51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내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인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없는 데에 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7호 나목에서 정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2. 13.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록을 하고 제주시 ○○동 ○○○-○에서 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 외 이○○이 2012. 09. 0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내역을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09. 21.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보공개 결정한 사실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고, 이에 2012. 10. 09.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0. 16. 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각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2012. 10. 1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의 통지를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6호, 7호 단서 조항 적용의 오류이다. 본 청구사건은 현재 제주지법 2012노○○○호 항소부에서 재판계류중인 바 위 열거된 법조문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기각은 본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법률 적용하는데 오류를 범하였다. 현재 재판 계류 중 사건을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물론 개인적 명예훼손 그리고 영업상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 신청 기각의 법률 적용은 그 절차 및 사건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보공개 요청한 일방의 의견만 받아들여 이의신청 기각한 법률의 적용은 위법, 부당하다.

나. 본 사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4호를 적용해야 한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과정 보완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당연 공개치 않도록 되어 있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하는 제주지법 2012노○○○호 항소부에 계류 중인 사건의 고발자와 행정처분을 요구한 자는 동일인이지만 형사재판과 행정청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분과 처리결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계류중인 사건의 내용은 공인중개사 김○○이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이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와 법정양식이 아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1년도 제10회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개수수료는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재결을 받아 업무정지 1개월로 행정처분 또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벌금 3백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서 마무리된 행정처분 사항을 정보 공개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가 아니며 공개되더라도 진행 중인 사건에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인

(이○○)이 요구한 자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행 중인 소송 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비공개 할 사항에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 5. 인정사실

이 사건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 통보서, 관련법령 등의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이○○은 2012. 09. 03. 피청구인에게 제3자인 청구인의 공인증개사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내역의 일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09. 10. 청구 외 이○○에게 청구인의 공인증개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제3자가 김○○ 공인증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요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 외 이○○은 2012. 09. 1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공개대상정보로서, 청구인의 위법·부당한 부동산중개업 사업 활동으로 인해 청구 외 이○○이 큰 피해를 입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 사기, 횡령 등으로 제주지검에 고소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12. 09. 21. 청구 외 이○○이가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처분의 상호, 등록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역은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준수할 것을 심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27. 청구인에게 ‘김○○ 공인증개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보공개 결정이 있어 2012. 10. 26.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10.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은 본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 자로써 위 사건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 요청할 이유가 없고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당사자의 인격침해는 물론 각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6.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기각결정 하였다.

## 6. 판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따라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 369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주지법 2012노○○○호 항소부에 계류 중인 사건의 고발자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는 동일인이 아니지만 **하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절차로서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 이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정보는 청구인 공인중개사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역으로 위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여 **제주지법 2012노○○○호 항소부에서 행정처분의 내용에 기속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인 위험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 해당 여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나목에서 정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지 살펴본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시 지도·점검 실시 후 위법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을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처분내역의 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나, 다만,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인 단서조항은 조문에 직접적으로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이 중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인 바, 이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역의 정보에는 행정처분 내역(등록취소, 영업정지 최소 15일~6개월 미만)의 정보가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처분 내역은 위반업소별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로 구분하고, 영업정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최소 15일~6개월 미만)이 기재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단서조항인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8 ○○○○시가 국내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

정보공개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21525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9. 4. 1. 정보공개청구한 ○○○○시가 2009년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4. 1. 피청구인에게 2006. 7. 1. 이후 ○○○○시가 국내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에 집행한 광고비의 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및 집행일자, 집행금액, 광고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4. 23. 일부 언론매체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동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2010. 2. 2. 우리 위원회는 동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7. 1.부터 2008. 12. 31.까지 집행한 광고비의 세부내역은 공개하였고, 청구인은 2010. 4. 16. 피청구인에게 ○○○○시가 2009년 국내 언론사에 지급한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4. 27. 청구인에게 매체별(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기타) 광고금액, 언론사, 광고내용 등을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4. 29. 다시 피청구인에게 ○○○○시가 2009년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해당 언론사로부터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 46개 언론사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공개 결정을 한 후 2010. 5.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2010. 2.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언론매체별 광고단가는 광고시장의 여건 및 사회적 이슈 등의 요인으로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상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고, 광고국 영업사원들에게 주어지는 기밀정보로 광고주, 광고내용, 지면, 크기, 게재횟수 등 다양한 요소가 감안되어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10. 2. 2. 재결 당시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법이 2010. 2.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미 2010. 4. 27. 청구인에게 ○○○○시가 2009년 매체별로 집행한 광고금액과 광고매체, 광고내용 등을 공개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시의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은 충분히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정광고는 정부광고와 마찬가지로 비상업적 광고로서 그 자체로서 공익광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언론사들을 설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하는 만큼 공익광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언론사들과 피청구인의 광고비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 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언론사들로 하여금 공익광고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익광고단가 상승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빌미로 특정기관

에 정보공개청구를 습관적으로 남발하여 정보공개 목적을 악용하고 있다.

####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 제11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4. 16. 피청구인에게 ○○○시가 2009년 국내언론사에 지급한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고 2010. 4. 1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4.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해당 언론사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통지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한 46개 언론사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이 사건 정보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2010.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련규정의 요지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같은 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보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3항과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판단

피청구인은 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었음을 주장하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동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 46개 언론사에 대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피청구인이 집행한 홍보비는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해당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비공개 의견을 제출한 46개 언론사에 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9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비교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8누2214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비교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금원 지급 등 이행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비교표) 사본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일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이행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 이 유

####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비교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공개청구에 관해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및 그 처분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의 피고들의 지위, 사업의 추진방식, 국고보조현황, 하도급 및 책임감리에 관한 협약내용 및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책임감리사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 ○○장관으로 그 관장 업무가 승계되기 전의 △△부장관은 주무관청으로서 2004. 3. 19.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맺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국고보조금으로 합계 금 5,000여억 원을 지원받아 2004. 8. 12.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공사에 착수하여 2009. 7.경 완공하였다.
- 당시 시행되던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의 결정(제4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제8조의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5조), 준공확인(제22조) 등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독명령권(제45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권(제46조), 보고·감사권(제51조)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 한편 피고 ◎◎청장은 △△장관에 의해 이 사건 사업 중 토지취득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책임감리의 발주처이다.
-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하도급과 책임감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제20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공사감리사로부터 확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27조 ①정부는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정부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거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한다. ④공사감리자는 정부와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시 공자와 그 하수급자로 하여금 공사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고 ◎◎청이 ◆◆공사(주관사) 등에 발주한 이 사건 사업의 책임감리에 관한 전면책임감리용역설계서에 의하면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장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호의 사항과 함께 심사. 검토하여 우리 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②도급한도액 초과 여부, ③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갑 제41호증의 제79, 80쪽).

• 책임관리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제1항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 제6항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제1항 발주청 및 감리원 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5 제1항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2조 제1항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검토

###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73호)

**제16조 제1항**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 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 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하는 경우, 2.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제5항**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제5항은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 전의 것).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2008. 6. 5. 대통령령 제2080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 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7. 12. 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영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통보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2항**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 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한편 피고들은 2008. 5. 8.자 준비서면에서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KISCON)<sup>1)</sup> 중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내역서와 관련한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고 기재하였고, 2008. 5. 29.에 열린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부 장관이 위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41조의 각 기재,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회사나 그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여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회사나 그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공개하여도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한다.

##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하도급내역서(비교표) 사본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일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당심에서 추가하였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해 피고 ○○장관이 주관부처가 되어 구축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취지를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간접 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확정 전에 미리 구할 수는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참조)**, 이 부분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8누2657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여도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축법상 사용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의 승인 없이 임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건물 부분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정보는 같은 호 나.항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인 ○○○○○가 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 위 사유들은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민사상의 권리관계의 다툼에 불과한 사정들일 뿐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가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을 영위 한다거나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 및 상위 20개 의약품 관련 정보

정보비공개결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482

**주 문** 1. 원고 b, 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3. 6. 원고 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2 기재 요양기관 및 의약품에 관한 별지 목록 1<sup>1)</sup>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 2008. 3. 4.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2008. 3.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1) 목록 1

1.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제품명, 회사)

기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용 : 요양기관별 신고가격(기관명, 신고가격)

2.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제품명, 회사)

기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내용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별 신고가격(기관명, 신고가격)

나. 이에 피고는 2008. 3. 6.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인 요양기관별 의약품 신고가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08. 8. 22.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 중 그 대상을 보다 한정하여 **별지목록 2 기재 요양기관과 의약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 중 별지 목록 2 기재 요양기관과 의약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2. 원고 b, c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건대, 원고 b,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a의 주장

이미 전체 요양기관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제비 급여를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제약회사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는 1999. 11. 15.부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약제비를 요양급여로 상환함에 있어, 요양기관이 실제로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과 무관하게 고시가로 약제비를 상환해 주던 제도(이하 ‘고시가상환제도’라고 한다)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한 약제비 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이하 ‘실거래가상환제도’라고 한다)로 변경·시행하였다.

(2) 고시가상환제도 하에서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고시보다 낮더라도 요양기관에 대하여 고시가로 상환해 줌으로써 요양기관이 구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을 부당하게 이익(리베이트)으로 취하고 이를 건강보험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실거래가가 고시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보상하여 그 차액만큼 보험재정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적기에 상환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불법적·음성적인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되었다.

(3)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한 기준약가 범위 내에서 전분기에 구입한 의약품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하고, 자신이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가격,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 구입내역을 매분기별로 피고에게 신고·제출하도록 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요양기관별 의약품 신고가격으로서, 이는 의약품의 품목별 단가(특히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다),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회사, 약제비 청구가격 등을 포함하는 정보이다.

## 라.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은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둔과 아울러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그 규율대상인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특정 제약회사가 특정 요양기관에 특정 종류의 의약품을 어떤 가격과 수량에 판매하였는지에 관한 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약회사의 판매활동에 관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영업비밀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관행을 일소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약회사의 판매가격, 특히 낙찰가격 등이 경쟁업체에 알려짐으로써 추후 다른 의약품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어느 의약품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제시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게 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일회적인 입찰에 있어서의 낙찰가격일 뿐,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입찰 등 영업 전략에 있어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할 만한 정보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 그 판매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

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당초의 처분사유 외에도 행정조사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사이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b, c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목록 2

#### 1. 요양기관

##### 가. 의료기관

번호	병원명	대표자	주소
1	생략	생략	생략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나. 약국

번호	약국명	대표자	주소
1			
2			
3			
4			
5			
6			
7			
8			
9			
10			
11			

## 2. 약품

순번	제 품 명
1	생 락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2 ○○도가 사용한 환경시책홍보비 내역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8-22417

**주 문** 청구인이 2008.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9년도 제0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 피청구인이 2008. 10.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청구인이 2007년도~2008년도에 사용한 환경 시책 홍보비 0억 0천만원의 사용내역 영수증의 사본을 공개하라.

##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8. 10. 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07년도~2008년도에 사용한 환경시책홍보비(이하 “홍보비”라 한다) 0억 0천만원에 대한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15. 위 정보에 포함된 “언론사”및 “사업비”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8. 11.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의 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공개하라는 이행청구를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올해 홍보비 0억 0천만원이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그 홍보비 내역은 피청구인 소속 대변인실에서 사용하고 그 세부내역의 공개를 꺼린다고 주장한바, ○○도 각 과에 배정된 시책 홍보비는 각 과의 실정에 맞는 홍보를 위해 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 일괄 취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전용으로 보이는 바, 홍보비 사용 금액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해 세부내역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당연히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아울러 피청구인은 위 홍보비의 사용내역 영수증의 사본을 공개하여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 홍보비는 공개된 단가가 아닌 계약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서, 이것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언론사의 경영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피청구인과 언론사간의 법률분쟁도 예상되는 바 홍보내용은 공개하되 영업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세부 사업별 언론사명과 사업비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10. 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07년도~2008년도에 사용한 홍보비 ○억 ○천만원에 대한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15.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피청구인이 홍보비를 집행한 “언론사”에 대한 정보(이하 “①에 대한 정보”라 한다)와 홍보비 각 사용내역 중 “사업비”에 관한 정보(이하 “②에 대한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8. 10. 15.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공개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바, 이에 따르면 2007년도 홍보비의 경우, 홍보비는 기획보도(언론사 홍보), 카달로그제작 등에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각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비공개 하였고, 홍보비 집행대상이 언론사인 경우 해당 “언론사” 역시 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8년도의 홍보비는 그 당시 집행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 다 음 -

• 2007년도

연번	홍보방법	홍보내용	홍보기간	비고
1	기획보도	○○○종합수질개선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07. 7. 31.~8. 17.(5회)	
2	기획보도	○○○○규제에 신음하는 ○○유역	2007.12.4.	
3	기획보도	경제성장과 환경규제 상생의 길	2007.10.10.	
4	카달로그 제작	환경기업 해외마케팅 카달로그제작	카달로그	
5	기획보도	○○○○녹지보호촉	2007.12.6	
6	기획보도	○○ 유역대탐사 (발원지부터 하구역까지)	2007. 9. 20.~28.(3회)	
7	인터넷	2007 ○○○도 10대뉴스 ○○○ 관련 인터넷 홍보	2007.12. 2.~2008. 1. 25.	
8	기획방송	○○도, 대한민국의 미래 홍보물 제작 (물환경관리 선진화)	2008.1월(전국 2회, 지역2회)	

• 2008년도(추진 중)

- ○○○도 이미지 홍보 2회
- ○○○도가 대한민국의 환경을 이끈다
- 친환경상품 전시회 관련 도정 홍보
- ○○○총회 관련 도정 홍보

다. 이에, 청구인이 2008. 11.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 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의 사본(이하 “③에 대한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이행청구를 하였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① 홍보비를 집행한 “언론사”에 대한 정보 및 ② 홍보비 각 사용내역 중 “사업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홍보비를 집행한 “언론사”와 언론사를 비롯한 각 홍보 내역당 “사업비” 액수를 비공개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홍보비”라 함은,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매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피청구인이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와 그 사업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 받는다고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 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① 및 ②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① 및 ②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③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③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이 2008. 10. 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 공개청구한 사실이 없는 정보여서 피청구인 역시 그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정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와 별개로 청구인의 ③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이행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③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상 ③에 대한 정보의 공개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③에 대한 정보와 관련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홍보비를 집행한 언론사, 홍보비 각 사용내역 중 사업비”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13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평가등급 1등급과 9등급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 등의 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6833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 10조 제1항에 의하여 2002년 - 2004년의 기간 동안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 표시 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 등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함)의 공개를 청구
2. 피고는 2005. 4. 9.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함

### [2] 쟁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정보는 요양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는 의료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데에 가서 요양기관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바, 의료인은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환자와 질병의 특수

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며, 이러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므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주 문**
1. 피고가 200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9.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9.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가운데 **요양기관별<sup>1)</sup>, 의원급 표시과목별, 지역별 항생제 사용지표 및 급성상기도감염(upper respiratory infection, uri)<sup>2)</sup>에 관한 항생제 사용지표에 관한 정보(별지 1 목록 순번 1, 7항 기재 정보와 4항 기재 일부 정보)는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 18. 피고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1) 요양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말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2) 급성비인두염(감기), 급성편도염, 급성인두염, 급성결막염, 급성후두염 등을 포함하는 상기도의 감염질환 (I00-I06)으로 일명 '감기'로 통칭함.



(2) 피고와 △△△△△△△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5. 10. 20.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는데<sup>3)</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가 그 치료효과가 없어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야 하는 대표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 우리나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2005년 1분기 항생제 처방률은 59.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의료기관간 편차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표준편차 31.09). 요양기관 종별로는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으며, 의료기관간 편차도 항생제 처방률이 0.3%에 불과한 의원에서부터 99.3%에 이르는 의원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73%)와 소아과(64.3%)가 처방률이 가장 높다.<sup>4)</sup>
3. 우리나라의 경우 폐렴 사슬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의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율은 71.5%인데, 이는 네덜란드 0%, 영국 5.5%, 미국 32.6%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3) △△△△△△△원 급성호흡기감염증위원회는 2003년 4월경 ‘외래에서 진료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안)’을 작성·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생제 처방을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gabhs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 예를 들어 고열, 인후삼출물, 경부림프절염 등의 세균감염 징후가 있을 때에 필요하고, 주사제는 경구 투여가 불가능하거나 응급증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5)</sup>

(4) 대한의사협회가 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결정은 의사가 질병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적 소신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항생제 처방비율의 ‘높고 낮음’이 해당 요양기관의 신뢰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곧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어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11호증의 각 기재

3) 피고와 △△△△△△△원은 그 날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원 2,603 곳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4)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외국의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43%(1998-1999년), 네덜란드 16%(2000년), 말레이시아 26%(2002년) 등이다.

5) 미국의 fda는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는 이미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있고, 1998년 이후에는 급성기관지염에서 항생제 사용을 적응증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의사가 급성호흡기감염에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양식에 항생제를 사용하여야 할 이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이 법원의 견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 산하 △△△△△△△원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도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는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사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로, **이 사건 정보는 요양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요양기관의 명칭은 의료인이 소비자들에게 대하여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로, 이 사건 정보는 **의료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도 항생제 지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하여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영업상의 비밀이 누출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데에 가사 요양기관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인은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환자와 질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며, 이러한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의료소비자들에게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에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더욱 깊어지리라고 본다.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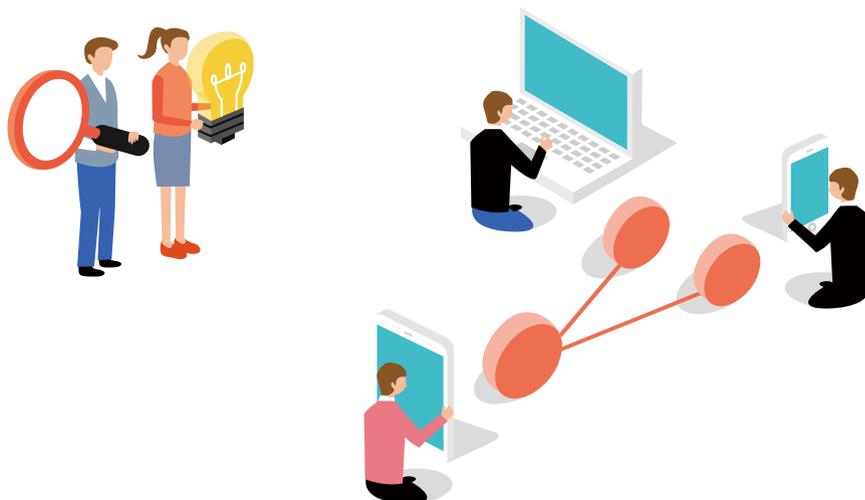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법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1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에서 사용한 PPT자료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1-373

**재결결과** 부분인용

**재결요지**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는 설명회 개최시에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된 이상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라거나 구역계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가 어렵다.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 PPT자료 중 [4. 구역계 설정부분]의 ○○구청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4.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0. 피청구인에게 2011. 3. 8.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에서 사용한 PPT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3. 청구인에게 PPT자료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정보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1. 3.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2. 청구인에게 공개 요구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고,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이며, 공개할 경우 부

동산 투기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공개 요구한 PPT자료는 피청구인이 도시환경정비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관련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로써 사전에 벌써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나, 위 정보는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써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 사전 설명회 당시 ○○동과 ○○동의 일부를 포함시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위 설문조사에 있어 피청구인의 계획은 관련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바,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 내용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 3. 피청구인 주장

당해 PPT 자료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 자료로서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고 구역계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과정의 서류이며, 공개할 경우 확실치 않은 정보를 확정된 것처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우리구 정보공개 심의의견에 따라 최종 비공개한 사항이며, 당해 PPT 자료를 활용한 설명으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한 사항이다. 앞으로도 당해 구역지정 추진시 변경되는 내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나. 판단

-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1. 3. 8.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1. 3. 10. 피청구인에게 위 항의 주민사전설명회 개최시 사용한 PPT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23. 청구인에게 위 PPT 자료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1. 3.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2. 청구인에게 공개요구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고,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이며,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8호에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PPT 자료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 자료로서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고 구역계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과정의 서류이며, 공개할 경우 확실치 않은 정보를 확정된 것처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의거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는 2011. 3. 8.자 설명회 개최시에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구역계의 1안, 2안, 3안이라는 내용 자체는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라거나 구역계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의 내용은 1. 과업의 이해,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3. 대상지 현황, 4. 구역계 설정, 5.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4. 구역계 설정부분의 ○○구청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경우에는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 중 [4. 구역계 설정부분]의 ○○구청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 5. 결론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② 특정 임대아파트 및 ○○지구의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및 건설원가 등 관련 자료 일체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342

**주 문** 1.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및 ○○지구의 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 및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원고는 위 자료 가운데 **택지분양가 부분을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된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 18.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분양원가와 관련한 자료로서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3, 5, 7, 8호 소정의 각 비공  
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특정한 정보의 내용은 당초 원  
고가 공개를 구한 정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특정한 정보  
에 대한 공개 역시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다). 과 같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 5, 7, 8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 (2) 피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분양전환가격과는 무관한 원가에 대한 정  
보공개요청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공개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전  
환가격 관련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니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무익한 것이다.

(나)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3은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입주  
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  
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이에 따라 피고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  
비 및 건축비를 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는 것  
으로 족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청구대상정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특정한 이 사건 정보목록은 피고가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정보목록에 속하는 정보는 그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피고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분량이어서, 이를 수용할 경우 피고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여서 원고 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 5, 7, 8호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인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 관련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다는 것이나 피고가 공개하였다는 정보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할 때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등의 사항일 뿐이어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2)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은 ‘법률’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서 당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

쉽게 얻도록 하려는 것일 뿐,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07. 7.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대상정보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특정한 이 사건 정보목록은 당초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정보목록 중에서 택지분양가 부분을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일 뿐 **당초 공개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으로 그 목록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바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정보목록에 속하는 정보의 전부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 5, 7, 8호 소정의 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을 뿐이고(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당초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또는 공개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의 부당한 인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우려나 가능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위 법조 소정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법조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대한 산출내역의 자료로서, 피고의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 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의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그 공개에 의하여 분양가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분양가격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책정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될 우려나 가능성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조 소정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1] 택지비관련 정보목록

순번	구분	문서(도서)목록	포함될 내용
1	용지비	1) 용지매입원가 내역 2) 용지 보상비 내역 3) 이자+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내역 4) 이자+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내역 5) 용지부분 수익금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정산 내역서 포함
2	대지조성 공사비	1) 설계 및 감리비 내역 2) 조성공사비 내역 3) 이설비 내역 4) 지적측량비 내역 5) 간선시설비 내역 6) 분담금 내역 7) 기타(이주비, 부대비 등)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정산 내역서 포함
3	간접비	1) 판매비 내역 2) 일반관리비 내역 3) 기타 간접비 내역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정산 내역서 포함
4	설계도서	1) 대지조성에 관한 도면 2) 대지조성에 관한 시방서 3) 준공도서	사업승인당시 내역서 및 준공정산 내역서 포함 설계변경 내역 포함
5		1) 택지조성원가 대비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자료 2) 분양규정시행세칙 별표1에 의한 택지비 자료	
6	법정증빙	위 각 지출내역에 대한 법정 증빙자료	

[별지 2] 건축비관련 정보목록

순번	구분	문서(도서)목록	포함될 내용
1	토목공사	1) 조경공사비 내역서 2) 토공사비 내역서 3) 포장공사비 내역서 4) 배수공사비 내역서 5) 맨홀 공사비 내역서 6) 흙막이 공사비 내역서 7) 비탈면 보호공사비 내역서 8) 옹벽 공사비 내역서 9) 석축 공사비 내역서 10) 우/오수 공사비 내역서 11) 공동구 공사비 내역서 12)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비내역서 13) 도로포장 공사비 내역서 14)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비 내역서 15) 정화조 공사비 내역서 16) 부대시설(폐기물 포함) 공사비 내역서	1) 각 공종별 직접공사비 내역서 2) 각 공종별 수량 및 단가(일위대가) 산출서 3) 토목공사 전체에 대한 제경비(간접비) 산정내역 4) 토목공사 전체에 대한 이윤 책정내역 5) 각 공종별 도급계약서 및 세부내역
2	건축공사 (부속건물 포함)	1) 공통가설 공사비 내역서 2) 가시설물 공사비 내역서 3) 지정 및 기초 공사비 내역서 4) 철골 및 용접 공사비 내역서 5)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 내역서 6) 조적 공사비 내역서 7) 미장 공사비 내역서 8) 단열 공사비 내역서 9) 방수/방습 공사비 내역서 10) 목 공사 공사비 내역서 11) 가구 공사비 내역서 12) 금속 공사비 내역서 13) 지붕 및 흙통 공사비 내역서 14) 창호 공사비 내역서 15) 유리 공사비 내역서 16) 타일 공사비 내역서 17) 돌 공사비 내역서 18) 도배 공사비 내역서 19) 수장 공사비 내역서 20) 주방용구 공사비 내역서 21) 잡 공사비 내역서	1) 각 공종별 직접 공사비 내역서 2) 각 공종별 수량 및 단가(일위대가) 산출서 3) 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제경비(간접비) 산정내역 4) 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이윤 책정내역 5) 각 공종별 도급계약서 및 세부내역 6) 건축공사 전체에 대한 준공정산 내역서(설계변경내역 포함)

순번	구분	문서(도서)목록	포함될 내용
3	기계 설비공사 (부속건물 포함)	1) 급수/급탕 공사비 내역서 2) 오배수 및 통기설비 공사비 내역서 3) 위생기구 공사비 내역서 4) 난방설비 공사비 내역서 5) 가스설비 공사비 내역서 6) 가대설비 공사비 내역서 7) 자동제어 설비 공사비 내역서 8) 환기설비 공사비 내역서 9) 장비설비 공사비 내역서	1) 각 공종별 직접공사비 내역서 2) 각 공종별 수량 및 단가(일위대가) 산출서 3) 토목공사 전체에 대한 제경비(간접비) 산정내역 4) 토목공사 전체에 대한 이윤 책정내역 5) 각 공종별 도급계약서 및 세부내역
4	전기공사	전기공사비 내역서	1) 각 공사별 공종별 직접공사비 내역서 2) 각 공사별 공종별 수량 및 단가 (일위대가) 산출서 3) 각 공사별 제경비(간접비) 산정내역 4) 각 공사별 이윤 책정내역 5) 각 공종별 도급계약서 및 세부내역 6) 각 공종별 준공정산 내역서(설계변경 내역 포함)
5	정보통신 공사	정보통신 공사비 내역서	
6	승강기 공사	승강기 공사비 내역서	
7	소방설비 공사	소방설비 공사비 내역서	
8	기타 부대공사	기타 부대 공사비 내역서	
9	설계/감리	설계/감리비 내역서	도급계약서 포함
10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산정 내역서	보험, 안전관리비,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포함
11	이윤	이윤책정 내역서	법상 책정 이윤 적용 근거 포함
12	설계도서	1) 각 공사별 사업승인도면 2) 각 공사별 설계변경 도면 3) 각 공사별 준공도면 4) 각 공사별 일반 시방서 5) 각 공사별 특기 시방서	1) 착공도면 포함 2) 사업승인조건 포함
13	법적 증빙	위 각 지출내역에 대한 법정 증빙자료	

# 09 정보부존재 등 기 타

## ① 본인 근무부서의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등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16두44674

**판시사항**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036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소송사건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6.11. 선고 95누12460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판결 참조).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8.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2013.11.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정보공개방법의 하나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제1항),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신용카드 사본 등)와 기록물관리대장 등 그 판시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목적, 정보공개로 인하여 소모되는 공공기관의 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대상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족하고 항상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방법인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열람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본안에 들어가,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통보가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거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119 신고자의 신고내용 녹음파일, 구급활동일지 사본, 현장 도착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부 영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공개방법을 열람공개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13423

###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에 관하여 열람공개 또는 존재확인 여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개방법을 열람공개 또는 존부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알 권리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방법에는 열람공개 뿐만 아니라 사본 교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파일의 교부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③, ④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는 이미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으므로 위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③, ④ 정보는 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구급차의 외부 및 내부 상황을 촬영한 영상자료로서 그 중 직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준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 중 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외부에서의 열람, 복제 및 전송이 용이한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유족인 청구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약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을 비롯한 고인의 유족들로서는 고인의 사고 당시의 현장상황과 구조 당시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언제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위 정보를 유족인 청구인에게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그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서는 만연히 열람공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4. 피청구인에게 201\*. \*\*. \*. 2\*:\*경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웨딩홀 부근의 횡단보도 보행자 甲의 교통사고건과 관련하여 ‘① 119 신고자의 신고내용 녹음파일, ② 구급활동일지 사본, ③ 현장 도착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구급차의 외부 블랙박스 영상), ④ 환자 甲의 이송 중 구급차 내부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② 정보 중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며, 이 사건 ③, ④ 정보는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 \*\*. \*.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甲(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직계가족으로서 사고 당시의 현장상황 및 고인의 사망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순 열람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는 행정편의만을 위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공개결정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ㅇㅇ도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지침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직계가족인 청구인에게 이미 이 사건 ③, ④ 정보를 열람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조,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9. 청구인에게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③, ④ 정보는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③, ④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위 정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과 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자료이다.

라.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도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의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구급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운영방안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록정보의 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영상녹화장치 설치장소 : 구급차 내부
  - 안내판 설치 : 구급차량 환자실 내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외 차량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안내판이 훼손 및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촬영방법 : 구급차량 운행 및 구급활동 중 수동 또는 자동으로 촬영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조작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정보 등의 관리
  - 자료보관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일이며, 기간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관리하여야 함
  - 보유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지침 규정 외 기타 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한 규정 및 서식을 준용함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의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와 목적,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치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

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판단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에 관하여 열람공개 또는 존재확인 여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개방법을 열람공개 또는 존부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알 권리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방법에는 열람공개 뿐만 아니라 사본 교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파일의 교부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

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③, ④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는 이미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으므로 위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③, ④ 정보는 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구급차의 외부 및 내부 상황을 촬영한 영상자료로서 그 중 직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준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 중 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외부에서의 열람, 복제 및 전송이 용이한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유족인 청구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을 비롯한 고인의 유족들로서는 고인의 사고 당시의 현장상황과 구조 당시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언제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위 정보를 유족인 청구인에게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그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서 만연히 열람공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3 수련시설 △△△컨설턴트과정 소방, 전기, 건축분야 합격자 담당업무 및 자격증 소지 여부, 전기분야 합격자점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한 경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8913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에 대한 구체적 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26.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① 수련시설 △△△컨설팅트과정 활동안전분야를 제외한 소방, 전기, 건축분야의 합격자 담당업무 및 자격증 소지 여부, ② 전기분야 합격자점수(평가요소)(이하 각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이 사건 정보 ② 중 평가요소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는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이 정하는 ‘시험·입찰계약·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합당한 방식으로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 것이라면 애당초 자신이 받은 점수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다른 합격자들의 합격점수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공개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정보의 공개는 그 자체로 합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극도로 침해하게 된다.

다. 피청구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컨설팅트에 대한 내부 평가자료는 인사평가에 관한 자료로서 비밀리에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해당 인력들의 반발과 사기저하 유발 및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피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하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이 사건 정보 ② 중 평가요소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는 명시하지 않고 '합격자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바,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 나. 판단

관계법령 등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하여 행정 지도 및 조사한 자료 일체, 위반자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정보공개 관련 문자발송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등 청구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0066

**재결결과**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6. 1. 1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2. 4. 행정자 처부의 질의회신을 거쳐 2016. 2.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재산보호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16. 1.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처리기간 연장안내 문자발송 행위를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적인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은 문서로서 통지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정보 비공개 결정서를 일반 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송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5.[web발신]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안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바, 피청구인이 2015. 5. 6.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등기우편으로 재송달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2016. 2. 5. 정보공개 결정 안내 문자발송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피청구인의 2016. 2. 5. 정보공개 결정안내 문자발송 행위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서의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만으로는 그 특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 26., 2016. 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공개 기간연장 안내(web발신),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안내(web 발신) 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1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2. 4.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을 거쳐 2016. 2.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재산보호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

###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1.13.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1) 2016.1.26. [web발신] 정보공개 기간연장안내 2)2016.2.5. [web발신]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안내로 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 기간연장 안내와 관련하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의 기간은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2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2016.2.5. 비공개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처분은 반드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는 그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 청구 여부, 청구절차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 및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비공개 결정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은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비슷한 사안에서 ○○군청 농림과에서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 결정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농림과에서는 산지관리법으로 수사, 위반자에 대한 입건처리로 정보 접근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건축과에서 처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 1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내역〉

- (가) 2010.1.1.~2015.12.31.간 ○○군청 관할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하여 행정지도 및 조사한 자료 일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익명 또는 삭제 처리)
- (나) 위 위반자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도 등) 일체(위반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이행 전·후 비교사진 일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익명 또는 삭제처리)

나. 피청구인은 2016. 1. 26. 정보공개 연장통지 관련 내부결재를 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문자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2. 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았다.

- (가) 질의 : 용도지역 및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산림사건이 발생한 임야지번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산림 범죄의 특성상 사건발생 산지의 소유자가 피의자이거나 고소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 토지의 등기부의 발급은 제3자 누구나 발급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피의자 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보공개 해야 하는지
- (나) 회신 :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고 공개한다고 하여도 누구나 발급할 수 있는 토지 등기부를 통해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추정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재산보호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생각됨. 다만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결정은 해당 공공기관이 하여야 함.

라. 피청구인은 2016. 2.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재산보호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청구의 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청구의 방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나. 판단

(1) 2016. 1. 26.[web발신] 정보공개 기간연장안내 취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통보를 문서로 받지 못하였고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문자를 처분으로 보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사유와 연장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6. 1.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처리기간 연장 문자를 발송하였을 뿐 문서로서 처리기간 연장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16. 1.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처리기간 연장안내 문자발송 행위를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적인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 2016. 2. 5.[web발신]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안내 취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통지로 받은 사실이 없고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를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① 처분사유 미기재 등 ②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리기간 미 준수 ③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④ 비슷한 사안에서 ○○군청 농림과에서는 일부 부분공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6.2.5. [web발신]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안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은 문서로서 통지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정보 비공개 결정서를 일반 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송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5.[web발신]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안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바, 피청구인이 2015. 5. 6.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등기우편으로 재송달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2016. 2. 5. 정보공개 결정안내 문자발송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피청구인의 2016. 2. 5. 정보공개 결정안내 문자발송 행위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만으로는 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5 구청장 전용 관용차량 현황

(특정인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일률적 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28

**판시사항**    甲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甲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甲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제로는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위법한 결정에 따른 거부처분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5.2.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주민인 원고는 2015.2.11. **피고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구입일자, 운행거리, 모델, 배기량, 구입가격, 주유비, 하이패스 카드 장착 여부, 하이패스 카드의 뒷자리 4자리 번호)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2.26. 원고에게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번호 생략)와 관련하여 비공개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유의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시 ▲구 정보공개심의회 2013.5.29.자 의결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비공개 기간이 2015.5.29.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 ▲구 정보공개심의회는 2013.5.29.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건과 향후 2년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도 위 의결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 2013.5.29.자 의결에서 정한 비공개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
- 2)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피고에게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5.경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 ▲구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② ○○○○시 ▲구 정보공개심의회는 2013.5.29.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13.5.31. 이 사건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7.29. 이 사건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서 ‘(정보공개청구 번호 생략)와 관련하여 비공개’라는 점을 밝힌 점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비공개한다고 기재한 것은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결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 사건 의결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차량 교통사고 관련 정보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종결한 사항)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19943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와 관련한 최초 112 신고시간, ②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최초 112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111-1111-1111 인지 여부, ③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1-1111-1111 전화번호로 신고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12신고자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인의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고, 첨부된 표준동의서도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대리하는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112신고자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종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112신고자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① 2015. 9. 18. 19:30에 발생한 11여1111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최초 112 신고시간, ②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최초 112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111-1111-1111 인지 여부, ③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1-1111-1111 전화번호로 신고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12신고자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0. 1.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화재에 근무하는 보상담당자인데, 음주운전사고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분증 및 112 최초 신고자인 A가 작성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까지 첨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112신고자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12신고자인 보험청구인에게 다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하거나 112신고자인 보험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위임장과 112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9.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표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위 가.항의 표준동의서는 청구의 A가 ○○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표준동의서이고, 위 표준동의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 1.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V)

-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계좌정보, 교통법규 위반 개인정보,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 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 정보 포함)

#### 2.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V)

- 조회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운전면허번호 포함),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교통법규 위반 개인정보

#### 3.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V)

-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보험요율산출기관, 경찰청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

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5. 10.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112로 직접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정보공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으로 112신고자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한 상태로 정보공개처리를 해달라고 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청구에 따를 수 없으므로 종결처리함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청구인 본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인의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외형상 청구인 명의로 정보공개가 청구**되었고, **첨부된 표준동의서도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가 청구인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하는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112신고자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종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112신고자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미제출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7 특정 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78

<b>주 문</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li> <li>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li> <li>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li> </ol>
<b>청구취지 및 항소취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li> <li>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li> </ol>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 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라고 기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결정통지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하였으나 2012. 3.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2)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별지1. 서식)는 ① 청구인의 인적사항, ②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③ 청구내용, ④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 ⑤ 공개내용, ⑥ 공개방법, ⑦ 수령방법, ⑧ 납부금액(수수료, 우송료, 수수료 감면액, 수수료 산정내역), ⑨ 결정일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36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장, 인천남부경찰서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밀양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진경찰서장, 부산사상경찰서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창원서부경찰서장, 사천경찰서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광주동부경찰서장, 광주남부경찰서장, 정읍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서부경찰서장, 인천계양경찰서장, 인천남동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대전대덕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 부산남부경찰서장,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금정경찰서장,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2012. 1. 1.부터 이 사건 청구일까지 사이에 위 각 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 또는 그 중 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대부분 공개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그밖에 강릉교도소장 외 17개 교정기관장(공주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서울남부교도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성동구치소장, 울산구치소장, 인천구치소장, 장흥교도소장, 제주교도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천안교도소장, 청주교도소장, 청주여자교도소

장, 춘천교도소장, 해남교도소장)에 대하여도, '2012년도 위 각 교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각 기관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등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부분공개결정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거나 자료수령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받지 아니한 채 모두 종결 처리되었다.

(5) 원고는 2011.부터 2013. 7.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이유로 47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하였고, 그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관외 출정비용으로 2,754,700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 771,524원만을 납부하여 면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미징수 비용이 1,637,476원에 이른다. 통상 수용자의 법정출정시 2~4명의 직원이 계호하는데 그 계호직원의 출장여비를 수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단지 차량이용 비용만을 청구하며, 그마저도 관내 출장시에는 출정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6) 원고는 이미 종료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인지대 및 송달료 외에 서기로, 제출비용, 출석비용, 자비부담 출정비용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 일부 출정비용(운임)을 실제로 전보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구하는 목적이 오직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괴롭히는 데 있을 뿐이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현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이고,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 모두 155건으로서 **전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약 11.8%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수감기간 중에 여러 곳의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전국의 교정기관장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나 ‘원고 본인이 고소인이나 피의자였던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또는 원고와 관련된 내사·진정기록’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 점,

③ 위의 정보공개청구사건들 중 **상당수의 사건들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장 또는 교정기관장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있었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소와 같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원고는 위의 행정소송절차에서 피고측의 권리남용 항변을 하면서 원고의 공개된 정보의 미수령을 그 사유로 주장하자, 그제야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부 정보를 수령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④ 원고는 이미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도만 달리하여 전국의 검찰청 검사장 등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기존에 공개처분을 받은 정보도 수령하지 않은 채 반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수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은 일일이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전국의 검찰청 및 교정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피고와 같은 기관들에 상당한 업무 부담과 함께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기관의 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⑥ 특히 원고는 수형기간 중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그 소송의 변론을 위해 2011.부터 2013. 7.까지 총 47회에 걸쳐 법정에 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정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납부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출정비용과 상계될 것을 우려하여 영차금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하면서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들에 대하여서도 **다수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부수적으로나마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한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국민으로서 알권리의 충족 및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정보공개법이 정한 목적을 벗어나 피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고를 괴롭힐 목적**

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권리남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질의 (실질적으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8740

**재결결과**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외형상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묻는 단순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답변하라.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5. ① **공무원이 근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뀐 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 ② **‘△△△가 이 사건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2014. 3.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①에 대하여 2009. 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직 후에 공상 공무원 신청이 가능(유예 2년)하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정보인 ② **△△△의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의거 종결 처리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가. 공무원이 근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답변을 하였으나,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않고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나. △△△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를 수공할 수 없다.

##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의거 공개가 불가한 사안이다.

나. 청구인은 2014. 2. 28.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5항2호에 의거 종결 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5. ① 공무원이 근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뀐 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 ② △△△가 이 사건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다.

나. 2014. 3.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① 공무원이 근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뀐 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2009. 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직 후에 공상 공무원 신청이 가능(유예 2년)하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정보인 ② △△△가 이 사건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공개 불가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의거 종결 처리하였다.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이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외형상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개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묻는 단순한 질의 내지 민원 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9 최근 1년간 주차이동을 명한 건수, 운전자가 없는 주차(정차) 차량에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한 건수 (부존재 정보 - 미보유)

정보공개이행청구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13-1172

**재결결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최근 1년간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와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부과하고 뺄소니 친 건수 및 견인한 건수를 각각 공개하라.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0. 피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와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를 부과하고 뺄소니 친 건수 및 견인한 건수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를 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27. 청구인에게 2013. 1월 ~ 10월 기간 중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건수는 12,132건이고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와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 부과하고 뺄소니 친 건수는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있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 구청장에게 청구취지의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

○구청장은 최근 1년간 교통에 위협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 부과한 건수 및 견인한 건수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견인한 건수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사항 중 ‘교통에 위협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 부과하고 뺑소니 친 건수’에 관한 정보는 주정차 단속공무원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정보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도로교통법 제35조

####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11. 20. 피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교통에 위협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와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를 부과하고 뺑소니 친 건수 및 견인한 건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27. 청구인에게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건수(2013년 1월~10월) 12,132건, 교통에 위협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와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 부과하고 뺑소니 친 건수는 정보 부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구청장은 2013. 11. 26.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최근 1년간 ① 주정차 단속 건수 39,481건, ② 견인한 건수 : 975건, ③ 이동을 명한 건수(계도) 11,827건 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시장 등은 임명하는 공무원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협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11. 27.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건수(2013년 1월~10월) 12,132건, 교통에 위협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와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 부과하고 뺑소니 친 건수는 정보 부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구청의 정보공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협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지 **해당 정보를 보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아니어서 행정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유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 부과하고 뺑소니 친 건수 정보가 **피청구인의 보유하고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차량 견인건수를 공개하고 기타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10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 (이미 공개한 정보 중복 청구)

정보공개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1063

**재결결과**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호텔 주방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와 같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청구로서 이미 답변한 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다시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호텔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이후 최근까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건 수’와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을 공개한 바 있고, 여기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취지의 목적이 이미 달성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을 공개하라.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12. 2. 피청구인에게 ‘○○시 ○○로 ○○호텔 주방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와 같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1. 12. 15. 청구인에게 동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청구로서 이미 답변한 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 11. 25. 피청구인에게 ‘최근 10년간 가스사고발생현황 및 가스사고 예방대책’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1. 12. 1.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미 공개한 정보의 공개요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즉시 공개서)결정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1. 25. 피청구인에게 ‘○○시 ○○로 ○○호텔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이후 최근까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건 수와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2. 1. 청구인에게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 가스사고 예방대책’을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2.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1. 12. 15. 청구인에게 동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청구로서 이미 답변한 민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 12. 1. 청구인에게 ‘○○시 ○○로 ○○호텔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이후 최근까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고 건 수’와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의 화재사고 위험성 및 그 예방대책’을 공개한 바 있고, **여기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취지의 목적이 이미 달성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11 국세청 통합시스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접속, 열람한 내역 등 (부존재 정보 -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994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국세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지만, **국세청은 위와 같이 접속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2) 국세공무원이 통합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는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 **그 로그인 기록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컴퓨터 기계어로 구성된 로그 파일 형태로 자동적으로 저장된다.**

3) 위 로그 파일은 사용자번호, 화면코드 등의 자료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각 자료를 숫자나 문자로 전환한 후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일이 대조하여야만 당해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조회할 때 그 조회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로그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아 **별도의 방법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소속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인 이 사건 정보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추출할 수 있다.**

4) 국세청은 전 직원이 로그인하여 조회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일시와 처리주체 등을 매일 야간에 주전산기에 배치·처리하여 자동으로 수록하고 있으나, 그 정보량이 방대하여 가공되지 않은 원시 로그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저장용량의 한계 때문에 1년 이전의 로그 파일은 안전행정부 소속 광주 통합전산센터에 따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3년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백업된 자료들을 되살리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5) 국세청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법상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거 B에 대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 (청구한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09두6001

**판시사항** [1] 공공기관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주문의 기재 방법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 등에 관한 공개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

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원심이,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점수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판결 주문 기재방법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부분 중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가공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와 등급구분점수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점수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원점수정보에서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는,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먼저, 원심이 원고가 각 수험생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른바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뿐, 달리 공개청구대상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한 채 ‘수능 원점수’의 공개를 청구한 점, 이에 피고는 각 수험생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하 ‘수험생 인적사항’이라 한다)과 당해 수험생의 원점수로 구성된 전체 수험생들의 개인별 원점수정보(이하 ‘수험생별 원점수정보’라 한다)가 공개청구대상정보임을 전제로, 학생의 성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학생의 동의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부터 수험생별 원점수정보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공개를 청구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험생 인적사항은 당초부터 정보공개청구 및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각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또한 원심이 피고로서는 원점수정보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한편, 정보공개법 제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6425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702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부분 중 수험생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건설원가 계산원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택시보상내역 등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비공개한 경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2006두4899

- 판시사항**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행정정보의 어느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처분사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7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1998. 4. 24. 선고 96두13286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8 정보공개 사례집



## 제3장

###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5년도 개최내역	350
2016년도 개최내역	363
2017년도 개최내역	375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5년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	2015. 1.3	<p>▶이의신청</p> <p>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p>	<p><b>비공개 : 제3호, 5호 및 8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구상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로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주관적인 판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li> <li>미확정된 지역정보의 제공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유발하고, 해당 주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재생협력과
		<p>▶직권심의</p> <p>'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수리모형실험 평가 및 출장 결과 보고' 결재문서</p>	<p><b>공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계약 및 수리모형실험이 완료된 사안으로 당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으며, 공개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동종의 실험 추진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li> </ul>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p>▶직권심의</p> <p>서울대공원(동물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관련 결재문서 3건</p>	<p><b>부분공개 : 제6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당해 감사가 종결되어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요청정보 내 포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li> </ul>	서울대공원 총무과
		<p>▶직권심의</p> <p>'한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회의결과 보고' 결재문서</p>	<p><b>부분공개 : 제6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건물의 매각이 완료되어 의사결정이 종료된 사안으로 외부 참석자 성명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li> </ul>	동남권공공 개발추진단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2	2015. 2.16	▶이의신청 SH공사 하자 관련 감사 보고서	<b>비공개 : 제5호</b> •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안전감사 담당관
		▶이의신청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관련 정보	<b>정보부존재</b> •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	해외도시 협력담당관
		▶이의신청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운영관련 집중회의 개최 결과보고’ 결재문서	<b>비공개 : 제5호</b> •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미확정된 사안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일자리 정책과
		▶직권심의 종합운동장 국제컨벤션 콤플렉스 조성사업 제안서	<b>비공개 : 제7호</b> • 제안 단체의 사업추진전략 등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관광사업과
3	2015. 3.5	▶이의신청 갈등조정회의 운영 관련 모든 문건 및 갈등조정관 보고서	<b>비공개 : 제5호</b> • 현재 당사자-조합간의 갈등이 진행중에 있어 공개시 보상 및 갈등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주거재생과
		▶이의신청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b> • 요청 정보 중 미확정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공개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부회의, 전문가회의 관련 정보는 비공개 하고, • 그 밖에 사업의 기본방침, 국제현상 공모 및 구조 안전성 검토 관련 정보는 상기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 또한 지역주민, 상인회 간담회 결과는 주민과의 논의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도로관리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3	2015. 3.5	▶ <b>직권심의</b>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 이촌동 일대)』 재정비용역 착수 보고회의 결과' 결재문서	<b>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b> •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미확정된 내용이 공개되어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며, 재정비용역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관리과
		▶ <b>직권심의</b>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협의 회신' 결재문서	<b>공개</b> • 진행중에 있는 용역사업 관련 문서에 해당하나 용역내용과 무관한 부서간 일반적인 협의사항으로 공개시 용역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도시관리과
		▶ <b>직권심의</b>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 이촌동)』 재정비 용역 공공 건축가 선정'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5호</b> • 공공건축가의 선정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관련 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공개시 공공건축가의 중립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건축가 성명 및 주요경력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도시관리과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환경 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문서	<b>부분공개 : 제7호</b> • 요청 정보 내 세부 설계도면, 건축기술 및 노하우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상기 우려가 없는 요약문을 공개	건축기획과
4	2015. 3.25	▶ <b>이의신청</b> 남산공원 접근수단(삭도시설) 개선방안 연구 자료 일체	<b>공개</b> • 이미 완료된 용역사업으로 공개시 진행중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공공재생과
		▶ <b>직권심의</b> '서울시 사물인터넷(IoT) 추진 기본계획' 결재문서	<b>공개</b> • 개괄적인 수준의 사업 기본계획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 다만 향후 세부사업의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	정보기획 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4	2015. 3.25	▶ <b>직권심의</b> '가락시장 현대화 T/F 2차 회의결과' 결재문서	<b>비공개 : 제5호</b> • 내부적 의사형성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민생경제과
5	2015. 4.10	▶ <b>이의신청</b> 사단법인 ○○선교회가 2004년 제출한 정관변경(기본재산 편입) 신청서류 일체	<b>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b> • 요청 정보 중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기명날인 부분 및 법인기본재산 상세목록은 비공개하고, •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	문화예술과
		▶ <b>이의신청</b>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의료진 명단	<b>부분공개 : 제5호</b> • 자문의료진 명단은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위축되고, 나아가 유사 사건에 대한 자문 기피 등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행정심판에 참여한 심의위원 명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법무담당관
		▶ <b>직권심의</b>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 I 유관기관 회의(1차) 결과 보고	<b>비공개 : 제5호</b> • 내부적 의사형성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보건의료 정책과
		▶ <b>직권심의</b> '지하철 9호선 굴착공사장 지하수 유출실태 점검결과' 결재문서	<b>유예 후 공개</b> • 현 시점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개는 곤란하나, 데이터에 대한 최종검증 후 공개	물관리 정책과
6	2015. 5.1	▶ <b>이의신청</b> 보라매안전체험관 프로젝트 램프 구매 관련 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납품관련서류 일체	<b>부분공개 : 제7호</b> • 요청 정보 중 수입신고필증 내 해외거래처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하고, • 정품확인서 및 해외거래처를 제외한 수입신고필증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기타 납품관련 서류는 부존재	안전지원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6	2015. 5.1	▶이의신청 장충리틀야구장 펜스 보호패드 구매 설치사업 계약 관련 정보	<b>부분공개 : 제7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청 정보 중 견적서 및 예정가격 검토 보고 문서는 업체의 제안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하고,</li> <li>이를 제외한 계약서, 공사내역서, 대가 지급현황서(준공검사(감독)조서) 등 계약 관련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li>영수증, 지원사유서는 부존재</li> </ul>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시설과
		▶이의신청 장충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철거 및 펜스 보호패드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 계약 관련 정보	<b>부분공개 : 제7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청 정보 중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는 업체의 제안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하고,</li> <li>이를 제외한 수의계약서 및 사업 시행방침 등 계약 관련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li>영수증은 부존재</li> </ul>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시설과
7	2015. 6.15	▶이의신청 아파트 실태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동대문구청과 주고받은 질의회신문서	<b>공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법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으로 공개시 업무 추진에 초래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li> </ul>	공동주택과
		▶직권심의 서울시가 고양, 김포, 파주 일대에 설치한 역외기피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 지원 현황	<b>비공개 : 제5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청 정보는 공개시 역외기피시설 관리 및 향후 동종의 의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li> </ul>	어르신 복지과
		▶직권심의 (주)통일로 관련 계약서 및 관련문건 일체	<b>정보부존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문서로,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 상 시에서 생산·접수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함</li> </ul>	어르신 복지과
		▶이의신청 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처리' 결재문서	<b>각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구 정보는 은평구에서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문서로, 우리시에는 공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존재 정보에 대한 이의 신청에 해당하여 각하</li> </ul>	주거사업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8	2015. 7.6	▶이의신청 ○○마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정산자료	<b>부분공개 : 제6호</b> •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 보조금 집행내역 중 개인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마을공동체 담당관
		▶이의신청 주민참여예산사업(함께 아이 키우는 마을, 아이맘센터) ○○마을 관련 지원 신청내용, 협약서	<b>각하</b> • 성북구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우리 시에는 공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존재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여 각하	보육담당관
		▶이의신청 송파문화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b>공개</b> •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문화예술과
		▶이의신청 중산4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금전출납부 또는 계정별 원장	<b>각하</b> • 해당 조합에서 보유·관리하는 문서로, 우리시에는 공개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 으며, 부존재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 하여 각하	재생협력과
		▶이의신청 청구인 아들이 수용된 아동보호 시설의 기관명, 수용기간, 수용하기로 결정한 문서	<b>비공개 : 제1호</b> • 아동복지법 제6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타 법령 에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으로 비공개	가족담당관
9	2015. 8.3	▶이의신청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취득 계획 (‘13.11.21) 및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보상 계획(‘13.10.21)	<b>부분공개 : 제6호</b> • 토지보상 계획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하고, • 토지취득 계획은 성명, 사방시설물 공작 물, 기준가격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산지방재과
		▶이의신청 서형심 2014-○○, -○○ 관광 숙박 업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관련 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영향 평가 자료	<b>공개</b> • 타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법무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9	2015. 8.3	▶이의신청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투자심사 의뢰서	<b>비공개 : 제5호</b> • 노들섬 활용방안 관련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공개시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공공개발 센터
		▶이의신청 서울특별시가 원고·피고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소송 현황	<b>부분공개 : 제4호, 제6호 및 제7호</b> • 진행 중 또는 종결된 소송의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 특히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소송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그 밖에 사건명, 접수일, 진행 상태, 판결결과 및 일자 등 공개	법률지원 담당관
10	2015. 8.21	▶이의신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및 회의결과 통보 문서(1·2차 자문결과)	<b>부분공개 : 제5호</b> •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은 공개하고, • 회의결과 통보 문서(1·2차 자문결과)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 활성화과
		▶이의신청 다산콜센터 직원 본인의 민원상담 녹취록	<b>비공개 : 제5호 및 제6호</b> •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 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시민봉사 담당관
		▶직권심의 '노들섬관련 검토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b>비공개 : 제5호</b> • 노들섬 활용방안 관련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공개 시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공공개발 센터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0	2015. 8.21	▶ <b>직권심의</b> ‘편식예방 및 관리 자치구 제안서 평가결과 및 지원계획’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5호</b> • 요청 정보 중 채점표에 포함된 심의 위원 성명은 공개시 평가자의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개 시 해당 사업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	식품안전과
		▶ <b>직권심의</b> DDP건설공사 부실시공 벌점 부과 현황(시공사 및 감리사)과 재심의 신청, 진행과정 정보	<b>비공개 : 제4호</b> •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 시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축부
11	2015. 9.18	▶ <b>이의신청</b> 제2기 시정학교 수료자 명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b>비공개 : 제6호</b>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당사자 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시민소통 담당관
		▶ <b>이의신청</b> 2025 서울형 복합쇠퇴지수 분석결과	<b>공개</b> • 공청회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미지 형태로 제공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통하여 발생하는 업무수행에 초래 할 지장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재생정책과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시민자문단 1차회의(6.25) 및 현장점검(7.1) 결과보고서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b> • 개별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 는 공개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시민자문단 현장점검 결과	• 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의사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 전체회의(7.8) 결과보고		건축기획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1	2015. 9.18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결과 및 임시사용승인 관련 재난대응매뉴얼	<b>부분공개 : 제3호</b> • 재난대응매뉴얼,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사전재난영향성 평가 결과보고서,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공개시 국민 의 생명 등의 보호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검토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b> • 개별 자문의견서 및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정보는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에 대 한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석촌호수 주변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진단' 민원회신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6호</b> • 민원인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 답변서는 공개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대한건축시공학회)	<b>비공개 : 제3호</b> • 건축물 구조에 대한 세부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으므로 비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롯데월드몰(영화관,수족관,공연장) 정밀 안전진단 중간보고서 등 자문결과 알림' 결재문서	<b>비공개 : 제5호</b> • 미확정된 구체적인 자문의견들이 포함되 어 있어 공개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등 관련 부실 측정 및 벌점부과 검토보고'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6호</b> • 벌점부과 대상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건축기획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2	2015. 10.19	▶이의신청 사찰 화재발생 당시 화재 동영상파일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b> • 직원 및 관계자 개인의 얼굴 등은 공개 시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목소리를 포함한 음성은 소방작업 수행에 필요한 무전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소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개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이의신청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b>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b> • 해당 사업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현재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학교이적지 및 미집행 학교시설 등의 정보는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사전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시설계획과
		▶이의신청 서행심 2014-○○ 행정심판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b>공개</b> •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법무담당관
		▶작권심의 2014.8.31.까지 종결된 법률 제9543호에 따른 하천손실보상금 관련 판결문	<b>비공개 : 제6호</b> • 해당 소송은 주로 개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서, 요청 정보 내에는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하천관리과
13	2015. 11.9	▶이의신청 정비사업조합 실태점검대상 중 은평구 소재 조합에 대한 적발·조치내역 및 점검예정 조합명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7호</b> • 적발·조치내역에 포함된 업체명 및 계약 금액 등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점검예정 조합명은 공개시 추진 중인 점검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시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재생협력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3	2015. 11.9	▶ <b>이의신청</b> 구로소방서 소관 업무 관련 전반적인 정보	<b>기각 :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물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도면 등 세부정보 및 개인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공개시 안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구로소방서 예방과
		▶ <b>사전심의</b> 서울시 시정사진기록 유형별 공개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사진기록은 업무상 작성한 공공저작물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민에게 서비스 가능</li> <li>다만 일반 시민의 모습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에 유의</li> <li>특히 복지수혜 대상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하거나 정치적 성향, 사상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은 신중히 활용</li> </ul>	정보공개 정책과
14	2015. 11.24	▶ <b>이의신청</b> 서울시 채용 변호사 성명 및 변호사별 담당사건	<b>부분공개 : 제5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호사 담당사건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시 해당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li> <li>변호사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므로 공개</li> </ul>	법률지원 담당관
		▶ <b>이의신청</b>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 회의자료 일체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 성명 및 해당 사건의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인 개인별 발언 내용에 해당하므로 비공개</li> <li>사건개요, 학교 의견서, 가해학생측 의견은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li> <li>자치위원회 회의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의거 공개</li> </ul>	교육정책 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4	2015. 11.24	▶ <b>직권심의</b>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 방안 완료보고 자료	<b>비공개 : 제5호, 제6호 및 제8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 사업이 시범운영중에 있어 공개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li> <li>• 다수의 면접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주택정책과
		▶ <b>직권심의</b>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종목 (결련택견, 십팔기) 조사보고서	<b>비공개 : 제5호 및 제7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공개시 해당 조사자가 유추되어 향후 공정한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단체의 사회적 평가 저하 등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역사 문화재과
15	2015. 12.7	▶ <b>이의신청</b> 서울시 경천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검토용역 보고서, 경천철 수익성 확대를 위한 협의회 관련 정보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보고서는 해당 용역이 이미 종료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li>• 협의회 구성현황, 회의자료 및 결과는 공개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및 발원자명을 제외하고 공개</li> <li>• 그 밖에 개최실적은 공개</li> </ul>	도시철도 계획부
		▶ <b>이의신청</b> 주거복지지원센터 위탁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관련 추가 회의자료, 위원 명단, 연락처, 이메일주소	<b>부분공개 :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회의자료는 해당 단체에 기 통보된 내용으로 공개</li> <li>• 위원 명단은 해당 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어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li>• 위원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시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주택정책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6	2015. 12.31	▶이의신청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로 질의한 내용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7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지번, 개설자 등 대상 점포에 대한 상세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li> <li>법령해석에 대한 우리시 의견은 미확정된 민원사항 관련으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고,</li> <li>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li> </ul>	소상공인 지원과
		▶이의신청 용산참사 보상대책 관련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행내용	<b>비공개 : 제6호 및 제7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공개시 보상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해당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도시 활성화과
		▶이의신청 망우본동, 신내1동 토지실거래 (수용보상거래 포함) 세부정보 (토지지번, 거래일자, 실거래가 등)	<b>비공개 : 제3호, 제6호 및 제7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또는 단체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거래 당사자의 사적 활동에 속하며,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토지관리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6년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	2016. 1.11	<p>▶청구인 및 제3자 이의신청</p> <p>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가해자측 탄원서 및 의견서 등</p>	<p><b>청구인 - 부분공개 : 제1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 성명 및 해당 사건의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인 개인별 발언 내용에 해당하므로 비공개</li> <li>그 밖에 자치위원회 관련 자료(결과보고 및 결과통보 공문, 결과통보서, 회의록, 재심결정서, 사회봉사 관련 공문, 학교측 의견서)는 공개</li> </ul> <p><b>제3자 - 비공개 : 제1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자측 탄원서 및 의견서 등은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의거 비공개</li> </ul>	교육정책 담당관
		<p>▶이의신청</p> <p>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피해자측 탄원서, 의견서, 주장 및 증거자료</p>	<p><b>부분공개 : 제1호 및 제6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심판 재결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li> <li>그 밖에 피해자측 탄원서 및 의견서 등은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의거 비공개</li> </ul>	교육정책 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	2016. 1.11	▶ <b>이의신청</b>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최종 결과'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7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붙임문서는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점수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해당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어린이집명 및 공인여부를 공개하고,</li> <li>• 결재문 본문은 상기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ul>	보육담당관
		▶ <b>직권심의</b>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 변경 추진, 성곽마을 앵커시설 부지매입 추진방안 등 결재문서 2건	<b>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확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주거환경 개선과
		▶ <b>직권심의</b> 성곽마을 실행계획 시장보고 결과 통보 및 협조 요청, 성곽마을(행촌권/다산권)앵커시설 부지매입 현장 조사 결과보고, 성곽마을 행촌권 보전관리와 관련 토지 및 건물매입 추진 보고 등 결재문서 3건		주거환경 개선과
2	2016. 2.24	▶ <b>이의신청</b> '2015년도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관한 의견 제출' 결재문서	<b>비공개 : 제5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관리 및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조직담당관
		▶ <b>이의신청</b> 언론사, 부서별 신문구독현황	<b>공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ul>	언론담당관
		▶ <b>이의신청</b> 심야 콜버스 법률자문 결정문	<b>비공개 : 제5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심야 콜버스 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버스정책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2	2016. 2.24	▶ <b>이의신청</b> 2016년 상반기 4급의 승진 관련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약무직 심사 부분 (발언자 부분 제외)	<b>비공개 : 제5호</b> • 요청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위원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저해되는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 <b>이의신청</b>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광고사업 권 관련 계약내용 중 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 등	<b>공개</b> • 요청 정보는 시와 체결한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며,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교통운영과
3	2016. 4.7	▶ <b>이의신청</b> 제2롯데 교통개선대책 TF 검토회의 결과보고 2건	<b>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b> • 교통개선대책 관련 미확정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건축기획과
		▶ <b>직권심의</b> 시청 본관, 별관, 신관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b>부분공개 : 제2호</b> •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는 건물 구조의 세부수치 및 설비(전기, 기계, 통신, 공조 등) 공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 그 밖에 건물의 세부적인 수치 및 보안 시설 위치 등을 제외한 청사안내도 및 이와 유사 형식의 도면은 공개	총무과
		▶ <b>직권심의</b> '덕수궁 돌담길 회복사업 영국 보안 전문가 협의 결과 보고' 결재문서	<b>비공개 : 제2호</b> • 공개시 대사관의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외교마찰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로계획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3	2016. 4.7	<p>▶ <b>직권심의</b></p> <p>2012년~15년 서울대공원 내 민원이 제기된 업체명(공개불가시 민원제기 업체의 업종과 수익허가 면적)</p>	<p><b>공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별 제기된 민원 건수는 공개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li> <li>• 특히 민원제기 횟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청구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개</li> </ul>	서울대공원 운영과
4	2016. 4.20	<p>▶ <b>이의신청</b></p> <p>시가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중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소송 건수</p>	<p><b>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li>•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그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공개</li> </ul>	법률지원 담당관
		<p>▶ <b>직권심의</b></p> <p>「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 도시가스요금</p>	<p><b>비공개 : 제5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개정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시의회 심의 등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현저한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민생경제과
		<p>▶ <b>직권심의</b></p> <p>중화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제출한 원가자문 설계도서</p>	<p><b>비공개 : 제5호 및 제7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자문 업무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자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li> <li>• 조합의 계약(입찰)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계약심사과
		<p>▶ <b>직권심의</b></p> <p>1980년~청구일 현재까지 서울시 침수흔적도 SHP파일</p>	<p><b>보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작성 등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연구를 위한 청구시 활용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개하는 방안 검토</li> </ul>	하천관리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5	2016. 5.18	<b>▶이의신청</b> 특정인의 서울시 공무원 이력사실 확인	<b>각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인의 서울시 공무원 이력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청구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각하</li> <li>• 다만 본 청구에는 성명 외 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완요청 선행을 권고하며,</li> <li>• 향후 서울시 재직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은 민원사무로 처리</li> </ul>	인사과
		<b>▶사전심의</b> 롯데 시행 석촌호수 주변 지반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 시에서 롯데 측에 용역결과 제출을 요청한 공문 및 연구결과 보고서	<b>공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정보는 공개시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불이익을 초래할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용역의 수행이 이미 완료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li> <li>• 또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등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공개</li> </ul>	물순환 정책과
6	2016. 6.23	<b>▶이의신청</b> 아파트 조망권 침해 및 NH 관련 민원, 진정, 소송 신청 및 기재내용	<b>부분공개 :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조망권 침해 관련 소송 및 NH 관련 민원, 진정, 소송은 제기된 바 없으므로 관련 정보는 부존재</li> <li>• 아파트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 진정 관련하여 민원내용은 공개시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 청구된 민원의 목록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공개</li> </ul>	공동주택과
		<b>▶이의신청</b> 무전취식 방송보도 관련 조사담당관 이 조사한 관련자 진술내용	<b>비공개 : 제5호 및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진술내용의 공개만으로도 당사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크며,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li> <li>• 또한 진술내용 공개 시 조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조사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7	2016. 7.7	▶이의신청 본인 명의로 다산콜센터에 신고된 민원통화 녹음파일	<b>비공개 : 제6호</b> • 음성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상담사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로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다만 본 사안은 공개여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민원 처리절차에 의거 조치	시민봉사 담당관
		▶제3자 이의신청 세월호 사고 기부금(성금) 모금 관련 국민일보(주)가 제출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및 단체별 모금액	<b>공개</b> • 관계 법령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민관협력 담당관
		▶이의신청 도시공간개선사업 집중회의 결과 보고[도시공간개선사업 현안업무(부시장)/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시장)]	<b>비공개 : 제5호</b>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미확정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공간 개선단
		▶직권심의 '장애인거주시설 「마리스타의집」 조치계획 통보'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6호</b> •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시 조사업무 및 시설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장애인복지 정책과
		▶직권심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및 송전원 행정처분 변경 조치 계획'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4호</b> •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고발내용 등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장애인복지 정책과
		▶직권심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및 송전원 조치계획 통보' 결재문서		장애인복지 정책과
		▶사전심의 행정정보공표 정비(안)	<b>원안가결</b> • 행정정보공표 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정보공개 정책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8	2016. 7.25	▶이의신청 본인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감사 사전준비로 수집·작성한 일체의 감사자료 문서	<b>공개</b> • 청구인 측이 제출하거나 이미 수령한 정보로서 공개시 감사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이의신청 도시정비사업 중 시장 직권해제 예정지역 현황과 판단근거,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각 지역 현황 등	<b>부분공개 : 제5호 및 제8호</b> • 시장 직권해제 예상지역 및 판단근거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구청장 및 주민이 해제요청한 지역 현황은 고시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공개 •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추진 실적 등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일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하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체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	재생협력과
9	2016 8.5	▶이의신청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관련 협의결과 보고	<b>비공개 : 제5호</b>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미확정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공간 개선단
		▶이의신청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신속추진 요청’ 결재문서	<b>공개</b> • 부서간 일반적인 협조요청 문서로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시공간 개선단
10	2016. 8.30	▶이의신청 2010.1.29. 서울특별시 복지국 내부 자료 및 서울 추모공원 인근마을 종상향 요구 관련 협조요청 공문의 첨부문서	<b>비공개 : 제5호</b> • 2010.1.29. 복지국 회의는 비공식으로 진행되어 기록물등록대장 및 컴퓨터 등을 검색한 결과 당시 회의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부존재 • 협조요청 공문 첨부문서는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시 종상향 등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어르신 복지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0	2016. 8.30	<p>▶이의신청</p> <p>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1조~10조</p>	<p><b>부분공개 : 제7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제1~2조는 협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li>• 제3~10조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3자간의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협약행위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보육담당관
		<p>▶이의신청</p> <p>2016년 제8차 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 회의록, 참석위원 성명</p>	<p><b>부분공개 : 제5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차 지역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명 제외시 개인별 발언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발언자를 유추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언자명 등을 제외하고 부분공개</li> <li>• 참석위원 명단은 공개시 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발언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향후 동종 심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교육정책 담당관
		<p>▶직권심의</p> <p>서울 도로 밑 동공 105개 지점 위치정보</p>	<p><b>공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정보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 도로함몰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 및 사고예방 등 공익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동공의 위치정보 및 동공별 조치결과를 함께 공개</li> </ul>	도로관리과
11	2016. 10.5	<p>▶이의신청</p> <p>서울시의 강남구 공무원 징계요청 근거, 해당사건 관련 법률검토·자문,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p>	<p><b>비공개 : 제5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요청에 관한 사항은 처분요구에 따른 제반 업무가 진행중에 있으며, 공개시 해당업무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li> <li>• 나머지 징계요청 근거, 승진 적법여부, 징계요청 철회여부 등은 질의적 성격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에 해당함.</li> </ul>	조사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1	2016. 10.5	▶ <b>직권심의</b> ‘양재역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 허가 검토’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b> • 연장 허가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시설 계약자 및 전세금 등 일부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주차계획과
		▶ <b>직권심의</b> ‘서울메트로 침해사고 상황보고 자료 및 요청사항 알람’ 결재문서	<b>비공개 : 제2호</b> • 해당 기관의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다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기 우려가 없는 사이버공격 현황 및 조치결과 공개 권고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12	2016. 10.19	▶ <b>이의신청</b> 00 조성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관련 정보	<b>각하</b> • 요청 내용은 사실상 새로운 정보의 청구 또는 질의로서 당초의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 • 다만 추가 요청정보 중 미입상 응모작 명칭에는 응모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함축되어 있고, 자문위원의 인적사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권고	교량안전과
		▶ <b>이의신청</b> 신청인 토지를 제외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감정 평가내역	<b>비공개 : 제3호 및 제6호</b> •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는 개인의 재산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토지관리과
13	2016. 11.2	▶ <b>이의신청</b>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입기자단 명단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인원수)	<b>부분공개 : 제6호</b> • 출입기자의 직책, 연락처, 메일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소속된 언론사명, 인원수, 성명은 정보의 특성상 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상당수 대중에 공개되어 있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언론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3	2016. 11.2	▶ <b>직권심의</b> 테니스장 소음 관련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b>부분공개 :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문은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li> <li>• 재정문 외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문서 등의 매체에 기록된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별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li> </ul>	환경정책과
		▶ <b>직권심의</b> 이화여대 출동에 대한 타인의 구급 활동일지	<b>비공개 :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정보는 환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 환자상태에 대한 평가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인에게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 등으로부터의 위임관계 또한 확인된 바 없으므로 비공개</li> <li>• 다만 필요시 청구취지를 감안하여 상기 우려가 없는 수준의 구급출동현황 공개 권고</li> </ul>	서대문 소방서 재난관리과
14	2016. 11.18	▶ <b>이의신청</b> 인터넷신문사 00타임스 본점 임대차 계약서	<b>정보부존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본점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관련 법령 및 정상적인 업무프로세스 상 시에서 생산·접수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부존재에 해당함</li> </ul>	문화예술과
15	2016. 12.9	▶ <b>사전심의</b> 특정공무원 성희롱사건 관련 조사 담당관의 징계결정문서 및 피소청인으로서의 소청심사 대응문서 일체	<b>부분공개 : 제6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정보 중 국가인권위 결정사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은 이미 공개된 사항 또는 청구인이 기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비공개실익이 없으며,</li> <li>• 소청인의 결재내역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li>• 이를 제외한 부분은 타인에게 공개시 소청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조사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5	2016. 12.9	▶이의신청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제출서류 인 우이신설 유지관리계획서 등	<b>비공개 : 제7호</b> • 요청 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 중 하나로, 해당 업체의 기술력 및 운영노하우, 세부적인 사업추진전략 등을 포함하여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철도 사업부
		▶이의신청 00택시(주)의 차량면허대수 (양도·양수 전후)	<b>공개</b> • 택시회사가 보유한 차량면허대수는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택시물류과
		▶이의신청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업체명	<b>비공개 : 제7호</b> • 요청 정보는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중간 단계 성격의 점검결과로서 국세청의 확정처분 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확정된 사실의 공개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택시물류과
16	2016. 12.28	▶이의신청 00신문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개인정보 제외)	<b>공개</b> • 기본증명서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상기 우려가 없는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	문화예술과
		▶이의신청 00신문 폐업신고서 구비서류 (개인정보 제외)		문화예술과
		▶이의신청 (주)00종합건설 보유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별 정보	<b>부분공개 - 제6호</b> •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자격종별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시설안전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6	2016. 12.28	<p>▶제3자 이의신청</p> <p>00운수에 대한 최근 5년간 민원 현황 및 정부보조금 내역</p>	<p><b>공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정보는 당사자 간에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li> <li>• 특히 민원현황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단순 통계자료로서 공개 시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보조금 내역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li> </ul>	버스정책과
		<p>▶이의신청</p> <p>이화충신권 성곽마을 성곽길 주변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관련용역비, 용역업체, 용역기한 연장사유 및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관련공문 및 합의각서 등</p>	<p><b>부분공개 - 제5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업체명 및 용역금액은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기본정보로서 공개</li> <li>• 그 외 정보는 미확정된 자문회의의 내용 등 공개 시 해당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li> </ul>	주거환경 개선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년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	2017. 1.6	<p>▶제3자 이의신청</p> <p>소청심사 대응문서 중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시정권고 사례집 발췌본, 사건당일 결재내역</p>	<p>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자료는 청구인이 이미 공개된 사항 또는 청구인이 기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비공개 의무가 없거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li>특히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및 사건당일 결재내역의 공개는 당시 결정이 완료된 사항 또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일 뿐, 결정효력의 갱신 또는 변경 등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li> </ul>	조사담당관
		<p>▶제3자 이의신청</p> <p>00택시(주)의 차량면허 대수 (양도·양수 전·후)</p>	<p>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시회사가 보유한 차량면허대수는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ul>	택시물류과
		<p>▶이의신청</p> <p>00구 보건소장의 출장여비 부정수령에 대해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p>	<p>부분공개 - 제5호 및 제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개요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경력 등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li> <li>조사결과 중 '보건소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부분은 주변인 등의 진술내용, 최종처분 확정 전 중간검토결과에 해당하는 조사자 의견, 당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li> <li>조사결과 중 '출장비 부당수령금 환수시 가산금 미부과' 부분, 조치 계획 등 그 밖에 부분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공개</li> </ul>	조사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3	2017. 3.17	▶이의신청 2011~2014년 주한미군 지방세 감면액수	공개 • 요청 정보는 특정 징수대상 그룹의 감면액에 대한 통계치로서, 공개 시 개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세제과
		▶이의신청 2011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비공개 - 제1호 • 실제 명단이 공개된 위원을 대상으로 폭언, 협박 등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발언 제한 및 나이가 위원활동의 기피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이미 위원의 전체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참석위원 명단'은 비공개 • 다만 해당 회차의 위원 전체명단이 청구인이 알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 권고	도시계획과
		▶이의신청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은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원본	공개 • 기존 공개해왔던 정보로서, 지금까지 해당 정보 공개 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바 없고, 향후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조직담당관
4	2017. 3.30	▶이의신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간제안서, 서울시 대안 요약서, 기타 사업추진계획 내 세부내용	비공개 - 제5호 및 제7호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입찰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추진방식, 통행료, 총사업비, 총투자비, 사업수익률, 지하화 추진방안 비교표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안업체의 전략 및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로계획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5	2017. 4.26	<p>▶제3자 이의신청</p> <p>00운수(주)에 대한 월별 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내역 및 지급자수, 차량번호, 성명, 근무일수, 유류 충전현황, 유가보조금액, 서명</p>	<p>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금 지급내역(각 차량에 대한 월별 유류충전량, 유가보조금 지급금액, 차량번호)은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정보로, 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li>그 외 월별 지급자수, 성명, 근무일수, 회사분/운전자분별 유류충전현황 및 충전단가, 서명 등의 정보는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li> </ul>	택시물류과
		<p>▶이의신청</p> <p>도봉구 소재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 관련 '13.4월 당시 서울시에서 사업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 공문</p>	<p>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청 정보는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 시 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li> <li>해당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ul>	공공개발센터
6	2017. 5.17	<p>▶이의신청</p> <p>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단체와 맺은 단체협약내용</p>	<p>부분공개 - 제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협약전문, 단체협약합의서 중 단체협약 개정사항 공개</li> <li>단체협약합의서 중 기타합의사항 및 임금합의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li> </ul>	생활환경과
		<p>▶제3자 이의신청</p> <p>2016-0000호 사건 개인정보를 제외한 행정심판 재결서</p>	<p>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심판 재결서 사본은 비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li> </ul>	법무담당관
		<p>▶이의신청</p> <p>'16년 GRDP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10년~'14년 자치구별, 항목별 GRDP 시산데이터</p>	<p>비공개 - 제1호, 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RDP 사업 결과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빠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함</li> <li>시산데이터는 '통계법 제27조의2'에 의해서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공개</li> </ul>	통계데이터담당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7	2017. 5.24	▶이의신청 신청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용도변경 보류 사유 등	<b>비공개 - 제5호, 제8호</b>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각 기관의 중간단계의 검토의견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시관리과
		▶이의신청 신청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양천구청 열람공고 회신공문 및 양천구보건소 공문		도시관리과
		▶이의신청 신청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위해 시가 검토·검증한 자료		도시관리과
		▶이의신청 특정 공무원의 인사기록요약서 중 임용일 및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임용 및 근무경력 등		<b>부분공개 - 제6호</b>  • 선출직 공무원의 학력은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비공개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 그 밖에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각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8	2017. 6.12	▶이의신청 '재단법인 ○○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4차)',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 보고(○○)'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b>  • '기본재산 출연 이행 촉구' 공문은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 • '정관변경 허가 신청 사항 검토보고'의 본문·정관변경검토의견서(붙임1)·정관변경허가서(붙임2)는 계좌번호, 부동산 세부지번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 및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신청구비서류(붙임3)는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법률자문 회신결과(붙임4)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복지정책과
		▶이의신청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영역보고 결과' 결재문서		<b>비공개 - 제5호</b>  • 서울역 일대 지역에 대한 미확정된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8	2017. 6.12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당위성 제시 등 양천구에 보완요청한 공문	공개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나 공개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시관리과
		▶이의신청 '법률자문 의뢰요청(○○ 잠정폐쇄 가능여부)' 결재문서	공개 • 내부검토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이의신청 '○○ 회계지도 점검결과 송부 및 소명요청' 결재문서	공개 • 청구인이 기 열람 또는 보유한 자료로 비공개익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이의신청 '○○ 현장지도 · 점검 안내' 결재문서	공개 • 해당 정보는 단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이므로 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이의신청 '○○ 운영관련 자료제출 요청', '○○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의뢰', '○○ 운영관련 외부 법률자문 재의뢰' 결재문서	비공개 - 제5호 • 해당 정보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해당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이의신청 '○○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승인' 결재문서	공개 • 청구인이 기 열람 또는 보유한 자료로 비 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지역공동체 담당관
		▶이의신청 '2016년 민간위탁 ○○ 정산서류 제출' 결재문서		지역공동체 담당관
9	2017. 7.6	▶직권심의 서울시 공원 전체의 안전등급 평가결과	공개 • 인근 지역의 안전도 하락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며, • 오히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범죄 예방 및 안전도 개선 등의 공익적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공개	공원녹지 정책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9	2017. 7.6	▶ <b>직권심의</b> ‘물품검사(수)조서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b>보류</b> • 심의자료를 보강하여 추후 재심의	수집연구과
		▶ <b>직권심의</b>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업체명, 사용 연도, 업종, 가스사용량, 전력사용량	<b>공개</b> • 요청 정보는 법인 등의 일반적인 경영상 정보로서, 비공개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녹색 에너지과
10	2017. 7.26	▶ <b>이의신청</b>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건강 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별 성별, 연령, 체중, 사업 전후 혈액검사결과	<b>부분공개 - 제6호</b> • 혈액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등이 진료를 목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개별 대상자의 성별, 연령은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별, 연령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대상자의 체중은 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건강증진과
		▶ <b>이의신청</b> ‘공항버스 6500번, 6600번 등 2개 노선의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 조희’ 결재문서	<b>비공개 - 제5호, 제8호</b> • 노선조정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공개할 경우 노선변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향후 노선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문 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식 의견 수렴절차 전까지 비공개	버스정책과
		▶ <b>이의신청</b>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	<b>공개</b> •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사항으로 공개시 공항철도 직결 관련 타 기관과의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도시철도 계획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0	2017. 7.26	<p><b>▶사전심의</b></p> <p>본인이 제기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실명이 표기된 시민인권 보호관 결정문</p>	<p><b>비공개 - 제6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문】과【이유】의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6, 성희롱행위자’ 부분이 실명으로 표기된 결정문은 생산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li> <li>• 다만 상단의【신청인】,【피신청인】 부분이 실명 표기된 결정문은 존재하나, 공개 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인권담당관
11	2017. 8.4	<p><b>▶이의신청</b></p> <p>자원회수시설 우수탁운영 관련 관리 운영계획, 위탁업체의 임금지급명세서, 우수탁계약서, 각 시설별 낙찰율 등</p>	<p><b>부분공개 - 제7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운영계획은 업체의 독창적인 기술, 노하우 및 운영방안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li>• 임금지급명세서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 정보를 제외한 형태로 요청하고 있으며, 우수탁 운영협약서, 기술 및 가격협약서의 경우 시와 체결한 일반적인 계약내용으로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li> </ul>	자원순환과
		<p><b>▶이의신청</b></p> <p>공공보건의료재단 직원 채용 관련 면접응시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9인의 면접점수(개인정보 제외)</p>	<p><b>공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을 제외한 면접점수는 공개시 인사 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li> </ul>	보건의료 정책과
		<p><b>▶이의신청</b></p> <p>특정 2개 업체의 택시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에 수록된 기록 일체</p>	<p><b>비공개 - 제7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스템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자체예산 및 기술력으로 구축·운영 중으로, 수집항목 자체는 운영사의 독창적인 기술사항에 해당하며,</li> <li>• 시스템 내 수록된 정보는 각 운송업체의 차량별 운행정보, 수입정보 등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li> </ul>	택시물류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1	2017. 8.4	▶이의신청 2017 더 컬러 런 유치계획 중 근무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시설 사용료·행사 진행계획 등	<b>공개</b> • 근무자 인적사항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이므로 공개 • 사용승인 면적, 사용료, 예상인원 등 그 외 정보는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스포츠 마케팅과
		▶이의신청 2013년 제출된 성대야구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제안서	<b>비공개 - 제5호, 제7호 및 제8호</b>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도시계획 변경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미확정된 내용의 공개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유발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안업체의 전략 및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제안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공개발 센터
12	2017. 8.23	▶이의신청 00택시(주) 소속 전체 택시 차량번호 (일반택시, 외국인관광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 심야택시 등)	<b>공개</b> • 택시 차량번호, 법인명 및 법인연락처 등 택시현황정보는 공개시 개인 또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택시물류과
		▶직권심의 서울 내 모든 개인, 법인 택시 현황 (개인택시 택시번호, 법인택시 택시번호, 법인명, 법인연락처)		택시물류과
		▶직권심의 최근 15년간 연합뉴스에 투입된 예산(전재료 및 기타수입 전체예산, 연도별, 용도별 예산)		<b>공개</b> •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내용은 공개가 원칙이므로 연합뉴스사에 지급한 연도별 전재료 금액은 공개 • 이 외에 별도 지급된 기타수입 또는 용도별로 구분된 예산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13	2017. 9.4	▶직권심의 '물품검사(수)조사_2016년 제2차 소장작품(13) 박정희 1점' 결재문서	<b>공개</b>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수집연구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3	2017. 9.4	▶ <b>이의신청</b> 2015년 시내버스 평가결과 중 00자동차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b>공개</b> · 기 공개한 바 있는 정보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에 발생하는 침익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개	버스정책과
		▶ <b>제3자 이의신청</b>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통보' 결재문서	<b>공개</b> · 대부분 시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되거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공개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공개	버스정책과
		▶ <b>이의신청</b>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점검을 위한 제출서류 중 특정 업체의 직원 입· 퇴사 현황	<b>비공개 - 제6호</b> · 직원 입·퇴사 현황에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재생협력과
14	2017. 10.16	▶ <b>이의신청</b> 이동식발전기 입찰 관련 시험기관, 시험샘플 설정기준 및 시행방법, 시험항목 및 성적서	<b>부분공개 - 제6호</b> · 공공기관에서 구입한 제품이 적정규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시험자·확인자 성명, 서명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안전지원과
		▶ <b>이의신청</b> ○○ 갈등조정 관련 회의록 및 법적 기록물	<b>비공개 - 제5호</b>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갈등조정 담당관
		▶ <b>직권심의</b>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확인서(홍익대 학교 제2기숙사)'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6호</b> ·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큰 정보로 관계자 및 점검자 성명, 연락처, 전문인력 자격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마포소방서 예방과
		▶ <b>직권심의</b> '자체점검(종합) 조치명령서 『서강대학교』' 결재문서		마포소방서 예방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4	2017. 10.16	▶ <b>직권심의</b>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서강대학교 국제학사』(종합) 결재문서	<b>부분공개 - 제6호</b> • 공개에 따른 공익이 큰 정보로 관계자 및 점검자 성명, 연락처, 전문인력 자격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마포소방서 예방과
15	2017. 10.26	▶ <b>이의신청</b> 소방공무원 채용 등 시험을 위한 소방 전형업무 매뉴얼	<b>부분공개 - 제5호</b> • 시험개요, 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최종합격자 공고, 전형업무 행정심판 사례는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공고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개 • 그 외 정보는 시험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b>이의신청</b> 특정 공무원 보직경로, 근무기간	<b>비공개 - 제6호</b> •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시 당사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 <b>사전심의</b> 사전공표 행정정보 정비 및 추가(안)	<b>원안의결</b> • 사전공표 행정정보 정비 및 추가(안)을 원안 의결함	정보공개 정책과
		▶ <b>이의신청</b> 서울로 7017 안전유지 위탁업체 근무일지 중 “출입자, 노점상, 잡상인, 노숙인 통제여부” 관련 부분 일체	<b>비공개 - 제6호, 제7호</b> • 위탁업체 근무자의 개인정보 및 업체의 인력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서울로 운영단
16	2017. 11.10	▶ <b>이의신청</b> 특정인의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근무한 기간, 서울시 입사연도, 서울시에서의 주요 근무이력	<b>부분공개 - 제6호</b> • 대상자의 서울시 재직사실 및 당시 직위 등이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 사항인 서울시 근무기간, 입사연도는 공개 • 다만 시에서의 주요 근무이력은 개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6	2017. 11.10	▶이의신청 00운수 임원의 개인별 임금	<b>비공개 - 제6호</b> • 요청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 식별정보 제외시에도 개인을 추정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버스정책과
		<b>제3자 이의신청</b> 이동식발전기 입찰 관련 시험기관, 시험샘플 설정기준 및 시행방법, 시험항목 및 성적서	<b>부분공개 - 제6호</b> •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성능시험의 시험기준, 절차, 방법 등이 해당 업체만의 특별한 노하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또한 요청 정보는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서 공개의 실익이 크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안전지원과
17	2017. 12.4	▶이의신청 2017년 10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비정산비) 지출금액, 임금은행 및 계좌번호, 붙임서류 등	<b>부분공개 - 제7호</b> • 법인의 은행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외 민간위탁금 지출금액 및 청구서류(계좌정보 제외)는 공개	자원순환과
		▶이의신청 노원자원회수시설 일상감사 의뢰 관련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연차별 위탁비용), 원가계산서	<b>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b> • 현재 위탁자 선정 과정 중에 있어 공개시 적격자 심사 및 계약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자원순환과
18	2017. 12.18	▶직권심의 2016년 화재안전사건 분석 결과 보고	<b>보류</b> • 가·부 동수로 결정 보류	서북병원 간호부
		▶직권심의 2016년 화재안전사건 분석 결과 보고	<b>비공개 - 제5호</b> • 잠재적 오류유형별 구체적 회의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오류유형 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구성원의 '자율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개시 자율보고의 기피 등으로 안전사건 예방 및 개선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서북병원 간호부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18	2017. 12.18	▶ 직권심의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5과목) 문항별 정답률	공개 • 매 시험마다 문제 난이도, 문항별 정답 률 등 제반여건이 달라지고, 출제문제 및 정답이 이미 공개되고 있어 요청정보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공개	인재채용과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 2018 정보공개 사례집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02) 2133-5680

**제작** 김인철 행정국장

조영삼 정보공개정책과장

백광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주서진 주무관

**디자인·편집** 디자인세운 02) 2273-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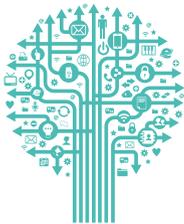
**출판물번호** 행정 821-0019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995-14

**I S B N** 979-11-6161-217-1

©서울특별시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넘어 공유로  
2018 정보공개 사례집

